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412-01

FTA 체약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1편 (중국 · 인도 · 베트남 · 태국 · 인도네시아)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Intro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이후 최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3개국과의 FTA가 새로 발효되면서 전세계 55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 하였습니다. FTA 체약국과의 교역량도 전체 교역량의 70%에 달하고 있어 이제 FTA의 활용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 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즉 세번(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고유의 관습이나 관행에 따라 분류기준은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체약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약상대국(수입국)의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를 활용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일 것입니다.

2017년 WTO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별 수출입기업이 각 국가의 제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교역량이 많고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국 · 인도 · 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 포함하여 총 21개 국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사전심사의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핵심내용만을 선별하여 〈 e-book 〉 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체약상대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수출입기업이 보다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데 작은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01. 중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2

02.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22

03.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44

04. 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58

05. 인도네시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84

주요 국가별 품목분류

구분	중국	인도
신청인	세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대외무역운영자를 신청인	1. 유효한 인도 수입-수출 등록번호를 보유한자 2.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는 자 3. 사전심사 판정관이 인정하는 신청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자 4. 인도에 거주하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대상	수출입 물품	수출입 물품
신청시기	수출입 하기 3개월 전	수출입 예정 90일전
신청서 제출	세관신고 시스템(QP SYSTEM)을 통하여 전자신청을 하거나 세관에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음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방문/우편)
제출서류	신청서와 수출입계약서 또는 수출입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 수출입계약서, 제품명, 사양, 모델, 원리, 기능, 용도 등을 포함한 제품 설명서, 화학제품은 분자식, 분자구조, CAS NO, 물질안전 보건자료, 기타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신청서와 부속서, 진술서 및 진술서류
서류보완	세관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보완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통지
처리기간	수락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3개월 이내에 처리
수수료	규정없음	건당 10,000루피
유효기한	3년	규정없음
재심사	결정에 불만족하는 경우 행정 재심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재심결과에도 불만족 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청문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재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법규상 없음
결정사례 공개	○	○

사전심사제도 비교 요약표

베트남	태국	인니
수출입 예정인 물품의 신청인	수입예정인 물품으로 사전심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자로 수출입업자로 등록된자	수입하는 자로 등록된 수입자 번호를 소유하고 있는자
수출입 물품	수입물품	수입물품
수출입 예정 90일 전	수입계획이 있는 경우 수입30일전, 구체적인 수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 60일 전	물품을 수입하기 전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방문/우편)	세관 Tariff E-Service를 통하여 전자신청을 하거나 세관에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방문/우편)
신청서와 있는 경우 성분, 구조, 화학식, 작동방식, 중량별 함량, 기술사양, 생산과정, 설계에 따른 용도, 물품에 대한 기타 정보를 제출	신청서와 물품명/거래상명칭/상표/모델이 기입된 자료, 물품의 특성, 성분, 생산법칙, 제작방법, 화학구조, 제작방법, 작동방식, 샘플, 카달로그, 분석결과, 유사물품 사전심사 결정자료를 제출	신청서와 물품의 상표, 이미지/브로셔, 카달로그. 제품사양서, 검사증명서, 제조공정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분석증명서, 시험분석서, 기타 정보를 제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초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 또는 본 심사 서류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 기한 내에 세관은 서류보완 통지를 하며 신청인은 그 내용에 따라 보완을 수행	접수일로부터 최초 접수일로부터 7근무일 또는 본 심사기간동안 세관은 서류보완 통지를 하며, 신청인은 15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연장가능)	서류를 접수하는 단계 또는 본 심사 단계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요청서상 기입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일반적인 경우 30일,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 처리	수입계획 유무에 따라 30일(유)/60일(무) 이내 처리	서류가 완벽하게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규정없음	건당 2,000바트	규정없음
3년	2년	3년
관세총국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내용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 상위기관인 재무부가 검토 해결하도록 서면으로 건의 할 수 있음	재심사의 신청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여야함	신청인은 관세청장의 결정에 재검토를 요구 할 수 있음
○	○	×

FTA 체약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1편

01

중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1. 중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사전판정) 세부 절차

사전심사의 종류	①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 ②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③ 수입물품 관세액 결정에 관한 관련요소 및 평가 ④ 관세청이 정한 기타의 사항
신청인	세관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대외무역 운영자
신청시기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기 3개월 전
처리기간	신청 수락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관	등록지 관할 세관
유효기한	결정서 통지일로부터 3년
신청 수수료	-
신청철회	특정한 사유 발생시 철회 가능

가. 사전심사의 신청인 및 신청기관

➔ 사전심사 신청인

ㅇ 중국 세관규정 제236호 제4조는 사전심사 신청인은 「세관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대외무역 운영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총무성 공고 제14호」에 따르면 사전심사 신청인은 「수입물품의 수탁인 또는 송하인」으로 규정 하고 있음

- 사전심사 신청인은 실제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는 세관에 등록된 대외무역 운영자로, 두 가지 유형의 대외무역 운영자로 나눠지게 됨

① 대외무역 대행업체를 포함한 관세법에 명시된 수탁인 및 위탁인

② 수입물품의 소비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자로 관세법상 실제 수취인 및 수탁인

- 따라서 실제 수출입과 관계없는 수탁인 및 위탁인과, 세관 중개인, 세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 최종 소비자 및 수출물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자는 사전심사 신청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중국 대외무역운영자 등록방법

① 양식 다운로드

-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http://iecms.mofcom.gov.cn/)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등록 기관(상무부, 대외무역경제합작국, 경제개발국)등[1] 에서 등록 양식을 얻을 수 있음

② 자료등록/온라인 신고

- 다음 등록 자료를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함
  - (1) 필요에 따라 작성되는 등록 양식
  - (2) 사업 라이센스 사본
  - (3) 조직 코드 인증서 사본

1) 등록기관 주소 http://iecms.mofcom.gov.cn/

(4) 대외 무역 사업자가 외국 투자 기업인 경우, 외국 투자 기업의 승인 증명서 사본

(5) 법에 따라 산업 및 상업 등록을 신청하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단독)인 경우, 반드시 법적 공증 기관에서 발행한 재산 공증 증명서

- 법에 따라 산업 및 상업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 (지역) 기업은 반드시 공증 기관이 발행한 자본 신용 인증 문서를 제출해야 함

③ 데이터 관리

- 등록 기관은 대외무역운영자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대외무역운영 등록 신청서'에 등록 직인을 찍어야 함
- 대외무역운영자는 30 영업일 내 현지 관세, 검사 및 검역소, 외환, 세무 및 기타 부서를 방문하여 등록 직인이 찍힌 "외국 무역업자 등록 양식"으로 외국 무역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제한 시간 내에 등록하지 못 하는 경우 대외무역운영자 등록 양식은 자동으로 무효화됨

④ 등록 양식 변경 또는 취소

- '대외무역운영자 등록신청서'의 어떠한 항목이 변경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내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함
- 대외무역운영자의 취소 절차가 완료되거나 사업 라이센스가 취소된 경우 대외무역운영자 등록 양식은 취소일로부터 자동으로 무효화됨

⑤ 컨설팅

- 대외무역운영자의 등록은 영토 관리 대상이므로 비즈니스 상담은 해당 지역의 상업국에서 받을 수 있음
-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국제 전자 상거래 센터 (010-67870108)에 문의할 수 있음

[표 1] 중국 대외무역운영자 등록양식(원본)

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

备案登记表编号：　　进出口企业代码：

经营者中文名称			
经营者英文名称			
组织机构代码		经营者类型 （由备案登记机关填写）	
住　　所			
经营场所（中文）			
经营场所（英文）			
联系电话		联系传真	
邮政编码		电子邮箱	
工商登记 注册日期		工商登记 注册号	

依法办理工商登记的企业还须填写以下内容

企业法定代表人姓名		有效证件号	
注册资金		（折美元）	

依法办理工商登记的外国（地区）企业或个体工商户（独资经营者）还须填写以下内容

企业法定代表人/ 个体工商负责人姓名		有效证件号	
企业资产/个人财产		（折美元）	

备注：	

填表前请认真阅读背面的条款，并由企业法定代表人或个体工商负责人签字、盖章。

备案登记机关

签　章

年　月　日

[표 2] 중국 대외무역운영자 등록양식(번역본)

대외무역운영자 등록 양식

출원 등록 번호 : **기업수출입번호 :**

운영자 성명(중국어)			
운영자 성명(영어)			
기업코드		운영자 유형 (등록기관 작성용)	
주 소			
사업장(중국어)			
사업장(영어)			
연락처		팩스번호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기업의 법적 대리인 성명		유효한 문서 번호	
등록자본		(USD)	

법에 따라 산업 및 상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지역)기업 또는 개별산업 및 상업가구(단독)는 다음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기업의 법적 대리인 /개별 사업 담당자 성명		유효한 문서 번호	
기업 자산 / 개인 재산		(USD)	

비고:	

양식 작성하기 전 뒷면의 약관을 주의 깊게 읽고 기업의 법적 대리인 또는 개별 사업 담당자가 서명하고 인봉하십시오.

등록 기관

서 명

년 월 일

➔ **사전심사 신청기관**

ㅇ 사전심사 신청 기관은 신청인의 등록지 세관임

나. 신청절차

ㅇ [신청대상] 사전심사 신청의 종류는 ①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 ② 수출입상품의 원산지, ③ 수입물품 관세액 결정에 관한 관련요소 및 평가, ④ 관세청이 정한 기타의 사항

ㅇ [신청기간] 신청인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기 3개월 전에 등록지 관할 세관에 신청을 할 수 있음

- 단 불가항력 또는 정책조정의 사유로 실제 수출입기간 보다 3개월 미만인 경우 세관에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서와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할 자료가 외국어인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 하여야 함

· 수출입계약서 또는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 수출입계획서

· 제품명, 사양, 모델, 원리, 기능, 용도 등을 포함한 제품 설명서

· 화학제품은 분자식, 분자구조, CAS NO,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기타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표 3] 중화인민공화국 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 번역본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인		
엔터프라이즈코드		
통합소셜신용코드		
우편주소		
연락번호		
이메일		
상품과 관계	☐수탁자	☐배송업체
동일 제품 사전심사 신청 여부	☐있음	☐없음
동일한상품에대해"세관사전결정 결정서"보유여부	☐있음 결정서번호 :	☐없음
상품의 기본정보		
제품 이름(중국어 및 영어)		
다른 이름		
수출입 일자		
수출입 항구		
수출입 수량		
거래방법		
제품설명(사양, 모델, 구조원리, 성능지수, 기능, 용도, 구성, 처리방법, 분석방법, 기타)		
첨부자료목록(관련자료첨부)		
구조, CAS 번호, 사진, 바코드(GTIN), QR 코드, 공장일련번호등		
신청인(서명) 연 월 일	세관장 (서명) 서 명 자 : 허용날짜 : 연 월 일	

※ 작성 주의 사항

1.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관세잠정조치를 읽어야합니다.
2. 기밀로 유지해야하는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3. 위 자료가 외국어인 경우 신청인은은 세관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표 4] 중화인민공화국 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 원본

附件 1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书

（商品归类）

编号：

申请人基本信息		
申请人		
企业代码		
统一社会信用代码		
通讯地址		
联系电话		
电子邮箱		
与货物关系	☐收货人	☐发货人
是否已就相同商品申请商品归类预裁定	☐是	☐否
是否就相同商品持有《海关预裁定决定书》	☐是　决定书编号：	☐否
货物基本信息		
商品名称（中、英文）		
其他名称		
拟进出口日期		
拟进出口口岸		
拟进出口数量		
贸易方式		
商品描述（规格、型号、结构原理、性能指标、功能、用途、成份、加工方法、分析方法等）：		
随附材料清单（有关材料请附后）：		
结构式、CAS 号、图片、条形码（GTIN）、二维码、出厂商品序列号等：		
申请人（章）	海关（章）：	

ㅇ [제출방법] 제출방법은 세관신고 시스템(QP SYSTEM, QUICK PASS)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세관에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음

- QP system / Quick pass 통관시스템(EDI)은 중국 해관에서 개발한 EDI기반 통관 시스템으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

· 주관기관 : 중국 해관

· 적용대상 : 수출입기업과 통관대리기업(통관사)

· 운영목적 : 세관 통관업무 개혁을 통해 세관이 기업분류 관리와 위험분석을 기초로 위험등급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분류를 실시하고 기업이 세관 신고서 및 첨부증빙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중국 전자항만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서 및 증빙서류의 전산데이터를 제출하여 빠른 통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

[그림 1] 중국 QP 시스템

ㅇ [접수] 세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고 통보를 하여야 함

- 승인이 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 수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보 함

[표 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결정 신청 수락 결정

附件 2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受理决定书

编号：

_____公司（单位）：

你单位于_____年__月__日提交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书》（编号：_____）收悉，经审核，符合《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管理暂行办法》的相关规定，决定受理你单位预裁定申请。

（公章）

____年__月__日

사전판결 신청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관세 행정 집행을 위한 잠정 조치」에 따라 신청을 수락한다는 내용

ㅇ [서류 보정] 신청서 및 제출 자료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의 신청수락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 하여야 함

- 사전심사 과정에서 세관은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보충자료 통지서를 수령하고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표 6] 보충자료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적용 통지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补充材料通知书

编号：

_____公司（单位）：

你单位于_____年__月__日提交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书》（编号：_____）收悉，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管理暂行办法》的相关规定，经审核，需补充以下材料：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以上材料请于 5 日内提交至预裁定机关。

（公章）

_____年__月__日

신청인이 제출한 사전심사 신청서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명시하여 통보한 경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전심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전심사 종료] 세관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를 종료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사전심사 종료 결정'을 발행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에 앞서 신청 철회를 신청하고 세관이 철회를 동의하는 경우
- 신청인이 세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샘플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 중재 결정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표 7] 중화인민공화국 사전심사 종료 통지서

中华人民共和国海关终止预裁定决定书

编号：

_____公司（单位）：

你单位于____年__月__日提交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书》（编号：_____）收悉，经审核，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管理暂行办法》第十二条第____款的规定，决定终止该预裁定申请。

（公章）

_____年__月__日

기 신청 사전심사가 종료된다는 내용

[표 8] 중화인민공화국 사전심사 철회 신청서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撤回申请书 _____（预裁定机关）： 我公司因_____ 原因，申请撤回于_____年___月___日提交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书》（编号：_____）。 （公章） _____年__月__日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철회의 신청과 그 사유

○ [사전심사 결정] 세관은 사전심사 결정을 사전심사 신청 수락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행함

- 사전심사 결정 서한은 신청자에게 송부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 물품에 대한 시험, 식별, 전문가 의견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60일의 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사전심사 결정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결정」서식으로 발행함

[표 9]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결정서(번역본)

서식 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결정
(품목분류)

번호:

신청인 :
기업코드 :
통일사회신용코드 :
우편주소 :
연락처 :
제품이름 (중국어、영어) :
기타명칭 :
신청번호 : _____ 수락일자 : 년 월 일
상품설명 :

사전심사 (8단위 품목분류코드) :	(공인) 년 월 일

주 : 본 사전심사 결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표 1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결정서(번역본)

附件 5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决定书

（商品归类）

编号:_

申请人：
企业代码：
统一社会信用代码：
通讯地址：
联系电话：
商品名称（中、英文）：
其他名称：
申请书编号：_____ 受理日期：　　年　　月　　日
商品描述：

预裁定（8 位税则号列）：	（公章） 年　　月　　日

注：本预裁定决定自作出之日起 3 年内有效。

○ [결정의 효력] 사전심사의 결정은 3년간 유효함

- 세관 사전심사 결정은 이미 수출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급 적용이 없음

○ [결정의 종료]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변경되고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사전심사 결정은 자동으로 종료됨

[표 11] 중화인민공화국 사전심사 결정 종료 통지서

附件 7

中华人民共和国海关终止预裁定决定书

编号：

_____公司（单位）：

你单位于____年__月__日提交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书》（编号：_____）收悉，经审核，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管理暂行办法》第十二条第____款的规定，决定终止该预裁定申请。

（公章）

_____年__月__日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서(번호:_____)을 받고 심사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잠정방법》 제12조 제____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전심사 신청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결정의 적용]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에 따라 수입신고하고 세관신고서의 비고란에 사전심사 결정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세관은 이를 승인함

➔ 사전심사 결정의 불복

ㅇ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행정 재심 청구 또는 행정 소송제기 가능

- 신청인은 사전판결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관총국에 행정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本办法第十八条 ,《海关行政复议办法》第二十三条),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세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재심을 결정하여야 함(30일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신청인이 행정 재심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주의사항

ㅇ 신청인은 제출된 자료의 진정성, 정확성, 완전성 및 표준화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세관은 사전심사 프로세스를 종료 할 수 있음

- 또한 사전심사 결정을 통지한 경우에도 해당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경고를 주거나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 기한은 60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정기간, 전문가 판정 기간 등과 같은 기간은 60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법정 안정성이 저해 됨
- 신청인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자료를 미리 신중하게 준비 하여야 함

2. 중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중국해관 접속

- 주소 : (http://www.customs.gov.cn)

STEP 2 메뉴 이동

- 화면 중앙 '信息查询(온라인서비스)' 메뉴에서 '분류결정 및 판결(归类决定和裁定)' 클릭

STEP 2 상세 검색

- 화면 상단 검색박스가 있으며, 상세 검색 항목으로 데이터소스, 문서번호, 결정세번, 품명(영문), 품명(중국어), 모델번호, 품명(기타)를 검색할 수 있음
- ① '품명(중국어)' 항목에 조회할 상품명 입력 후 ② '검색' 클릭

STEP 4 검색 결과 확인

- 검색 목록 왼쪽부터 차례로 문서번호, 품명(중국어), 결정세번, 모델번호, 더보기 항목임
- 결정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회할 물품의 ① '详细(상세)' 클릭

문서번호 | 품명(중국어) | 결정세번 | 모델사양 | 더보기

相关编号	中文名称	决定税号	规格型号	查看更多
D-1-0000-2018-0104	耳鼻喉检查台（归类决定编号：Z2018-004）		无 ①	详细
D-1-0000-2018-0086	装饰用纸（覆膜）	48	无	详细
D-1-0000-2018-0103	合成橡胶（归类决定编号：Z2018-005）	4002	无	详细
D-1-0000-2018-0101	滚轮组件	84835000	无	详细
D-1-0000-2018-0102	含铜宫内节育器（归类决定编号：Z2018-003）	90189091	无	详细
D-1-0000-2018-0100	半导体晶片测试仪	90318090	无	详细
D-1-0000-2018-0099	摄像头（归类决定编号：J2018-0022）	95045011	无	详细
D-1-0000-2018-0098	篷房	94069000	无	详细
D-1-0000-2018-0097	汽车环境风洞阳光模拟系统	94054090	无	详细
D-1-0000-2018-0095	激光二极管（归类决定编号：J2018-0018）	90132000	无	详细

STEP 5 결정서 내용 확인

- 해당 물품의 결정 관련 상세 내역이 팝업창으로 뜸
- 결정서는 문서번호, 결정세번, 품명(중국어), 품명(영문), 품명(그외), 제품 설명 그리고 분류 의견을 포함함

	归类指导意见（决定）	
문서번호	相关编号：	D-1-0000-2018-0101
결정세번	决定税号：	84835000
품명(중국어)	商品名称（中文）：	滚轮组件
품명(영문)	商品名称（英文）：	无
품명(그외)	商品名称（其他）：	无
제품 설명	商品描述：	滚轮组件由一个滚轮、一个中轴及铜制轴套组成，按固定的步骤安装并固定在锥形底座的中心轴上。当船用绞盘机放缆、收缆时，套在滚轮上的缆绳前后运动，滚轮则通过轴套在中轴上稳步转动。没有导缆滚轮的自转功能，收、放缆绳时缆绳会失去方向，不能按准确的甲板路径导向至船体边沿的导缆孔或带缆桩。导缆滚轮分为左旋、右旋，一定的位置装有一定方向的导缆滚轮，并且椎体底座焊接在甲板上时有不同的角度，以适应甲板左右两侧的倾斜度，这样才能引导缆绳顺利经过甲板，配合绞盘机完成系缆、收缆工作。功能：船舶系泊装置中绞盘机的辅助装置，当绞盘机处于工作状态时，导缆滚轮配合其收放缆绳，并进行缆绳引导。
분류의견	归类意见：	该商品由一个滚轮、一个中轴及铜制轴套组成，按固定的步骤安装并固定在锥形底座的中心轴上。当船用绞盘机放缆、收缆时，套在滚轮上的缆绳前后运动，滚轮则通过轴套在中轴上稳步转动。根据《税则注释》品目84.83的注释：“本组也包括……本身并不传送动力而仅作为传动缆绳的导杆或转向杆的自由滑轮（例如，调节传动带松紧用的惰轮及导轮）。”该商品符合品目84.83关于“滑轮，包括滑轮组”的描述。根据归类总规则一及六，该商品应归入税则号列8483.5000。（公告〔2018〕183号，2019年1月1日生效，归类决定编号：Z
	发布单位：	海关总署

关闭

02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1.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세부 절차

사전심사의 종류	① 품목분류, ② 세율, ③ 물품의 과세가격, ④ 관세 또는 세금의 부과, ⑤ 원산지 결정, ⑥ 기타 사항
신청인	① 유효한 수입-수출 등록번호를 보유한자 ②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는 자 ③ 판정관이 인정하는 신청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자 ④ 인도에 거주하는 자로 상기 신청인을 대리하는자
신청시기	규정 없음
처리기간	3개월 이내
처리기관	관세 사전심사 당국
유효기한	규정 없음
신청 수수료	10,000 루피
신청철회	30일 이내 신청 철회가능
신청기관	세관위원(customs commissioner)

가. 사전심사의 신청인 및 신청기관

➔ 사전심사의 신청인은 다음의 자로 인도에 거주하는 그들의 대리인을 포함함

- ㅇ 유효한 인도 수입-수출 등록번호를 보유한자
- ㅇ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는 자
- ㅇ 사전심사 판정관이 인정하는 신청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자
- ㅇ 인도에 거주하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 거주자라함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이 되는 자를 말함

➔ 유효한 인도 수입-수출 등록번호 발급 절차

○ 수입-수출 등록번호(IEC No., Importer-Exporter Code Number)란 인도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의 대외무역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발행하는 10단위 고유번호로 인도에서 수출입하려는 모든 개인 또는 업체는 반드시 해당 번호를 보유해야 함

- IEC는 2016년 4월 1일부터 반드시 온라인으로 IEC 신청
- IEC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규정(Trade Notice No 23/2018-19 New Delhi, Dated the 8 th August,2018)을 준수해야 얻을 수 있음

〈필수 정보〉

- 유효한 PAN 번호[2)]
- 유효한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

〈첨부 자료〉

- 증명된 회사 주소[3)]
- 은행계좌 증명서(Bank Certificate) / 인쇄된 취소 수표(Pre-printed Cancelled Cheque)

〈온라인 신청 절차〉

① 사이트 접속

- URL : www.dgft.gov.in

---

2) PAN(Permanent Account Number) 인도 소득세법에 의하여 모든 할당자에게 부여되는 고유계정번호로 10단위로 구성됨

3) *Any of the Following Documents: Sale deed / Rent agreement / Lease Deed / Electricity bill / Telephone Land line bill / Mobile Postpaid bill / MOU / Partnership Deed, Other acceptable documents(for Proprietorship only): Aadhar Card / Passport / Voter Id, In case the address proof is not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firm, a No Objection Certificate(NOC) by the firm premises owner in favour of the firm along with the address proof is to be submitted as a single PDF document*

② 메뉴 접속

Online Application 〉 IEC 〉 Online IEC Application 클릭

③ PAN 번호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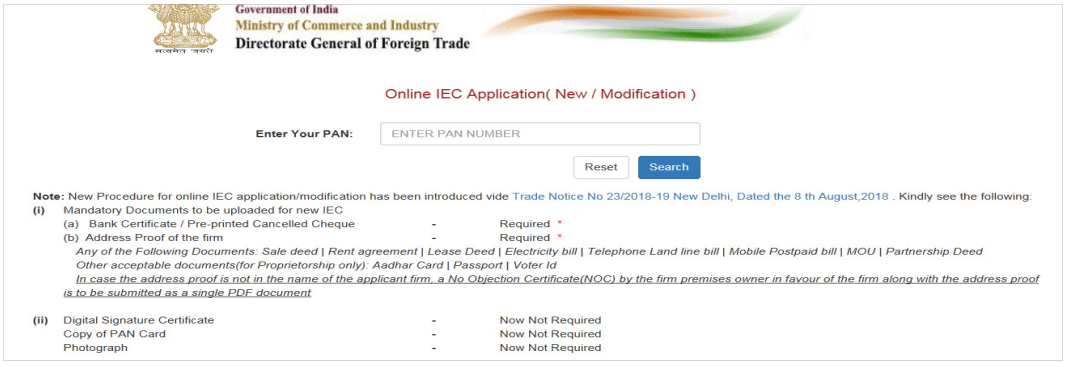

④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회사명, 생년월일(또는 회사설립일자) 입력
- 규정된 신청 양식에 따라 모든 항목을 기입

⑤수수료 결제

- 온라인으로 신청 수수료(Rs 500)를 결제해야 하며, 발급 이후 정보변경 신청시 Rs 200 소요됨

⑤ 디지털 서명 및 신청서 제출

- 디지털 서명 및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규 신청인은 디지털 서명 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음

⑥ e-IEC 확인

-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IEC 번호가 전송되며, IEC 정보변경 시 e-IEC 시스템에서 변경된 e-IEC를 출력 및 조회할 수 있음

[표 12] (구)IEC 발급 신청서 - Form ANF 2A(원본)

ANF 2A

Application Form for Issue / Modification in Importer Exporter Code Number (IEC)

Part A

To be filled by the Issuing Authority

IEC Details
i. IEC Number
ii. Date of Issue
iii. Issuing Authority

To be filled by the applicants

Un-attested Photograph of the applicant. Identical photograph should be used on the Bank Certificate.

Note: Please state 'Not Applicable' wherever the information / data is not applicable to you.

Fields marked * are optional. All others are mandatory

1. Applicant Firm Details
i. Name
ii. Address (Registered Office in case of Companies and Head Office in case of Others)
iii. Address of all Branches / Divisions / Units / Factories located in India & abroad (attach extra sheet if required)
iv. Telephone*
v.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with DGFT)*
vi. Name and Designation of the person whose photograph has been affixed on the Bank Certificate.

2. Details of Proprietor / Partners / Directors / Karta / Trustee of the applicant firm (attach extra sheet if required)
Total Number of Partners / Directors / Karta / Trustee in the applicant firm
Following information may be provided for each Proprietor / Partners / Directors / Karta / Trustee of the applicant firm
i. Name
ii. Father's Name
iii. Residential Address
iv. Telephone

3. Nature of Concern (please tick)	(√)
i. Government Undertaking	
ii. Public Limited Company	
iii. Private Limited Company	
iv. Proprietorship	
v. Partnership	
vi. Others	

4. Type of Exporter (please tick)	(√)
i. Merchant Exporter	
ii. Manufacturer Exporter	
iii. Service Provider	
iv. Others (please specify)	
v. Merchant cum Manufacturer	

5. Bank Account Details
i. Name of the Bank
ii. Address of the Bank
iii. Type of Bank Account
iv. Bank Account Number
v. Year of opening Bank Account

6. PAN Details
i. PAN Number
ii. Issuing Authority

8. Application Fee Details
Amount (Rs)—Rupees
Demand Draft
Date of Issue
Name of the Bank and its Branch on which drawn

Signature of the Applicant

Name

Designation

Official Address

Telephone

Residential Address

Email Address

Place

Date

[표 13] (구)IEC 발급 신청서 – Form ANF 2A(번역본)

page 1

ANF 2 A

수입 수출업자 발행 / 변경 신청서
코드 번호 (IEC)

파트 A

발급 기관 작성용

IEC 정보
i. IEC 번호
ii. 발행일
iii. 발행기관

신청인 작성용

신청인의 사진 (은행증명서에 사용한 사진과 동일해야 함)

참고 : 정보 / 데이터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 '해당 없음'을 기재하십시오.

***로 표시된 항목은 선택 기재사항이며 그 밖의 항목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회사 정보
i. 기업명
ii. 주소 (회사인 경우 등록된 사무소(Registered office) 및 그 밖의 경우 본사(Head Office)
iii. 인도 및 해외에 있는 모든 지점 / 부서 / 단위 / 공장 주소 (필요한 경우 추가 시트 첨부)
iv. 휴대폰 번호*
v. 이메일 주소 (DGFT 와 통신용) *
vi. 은행증명서에 사진이 등록된 자의 성명 및 명칭

-

2. 신청 회사의 소유주 / 파트너 / 이사 / 카르타 / 이사 관할 인의 세부 정보 (필요한 경우 추가 시트 첨부)
신청 회사의 총 파트너 / 이사 / 카르타 / 트러스트 수
신청 회사의 각 소유주 / 파트너 / 이사 / 카르타 / 이사에 대해 다음 정보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i. 이름(Name)
ii. 성(姓, Father's Name)
iii. 거주지 주소
iv. 전화번호

-

page 2.

3. 회사 유형 (체크 표시)	(√)
i. 공기업(Government Undertaking)	
ii.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iii.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iv. 비법인기업(Proprietorship)	
v. 합명회사(Partnership)	
vi. 그 밖의 유형(Others)	

4. 수출자 유형 (체크 표시)	(√)
i. 수출업자(Merchant Exporter)	
ii. 제조업 수출업자(Manufacturer Exporter)	
iii.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iv. 그 밖의 유형(상세히 기입하시오)	
v. 수출업자 겸 제조업자 (Merchant cum Manufacturer)	

5. 은행 계좌 정보
i. 은행명
ii.은행 주소
iii. 은행 계좌 유형
iv. 은행 계좌 번호
v. 은행 계좌 개설연도

6. PAN 정보
i. PAN 번호
ii. 발행기관

8. 신청 수수료 정보
금액(Rs)-루피
일람불어음
발행일자
지급은행명 및 해당 지점명

신청인 서명 장소

성명 날짜

명칭

공식 주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 사전심사의 신청기관은 다음과 같음

- ㅇ 관세 사전심사 판정은 관세청에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
- ㅇ 사전심사 판정관은 세관위원장 또는 세관위원 계급의 공무원을 판정관으로 임명
- ㅇ 판정관의 집무실은 뉴델리 또는 그 밖의 장소에 할 수 있음
- ㅇ 사전판정의 신청은 관세청에 할 수 있음

나. 사전심사 절차

➔ 사전심사의 형식과 절차

- ㅇ 관세법에 규정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법 규정에 맞는 사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위원회에 제출
  - 신청서는 4부가 작성되어야 하며 10,000루피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
- ㅇ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택배, 또는 우편) 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에 서명 및 대리인의 권한을 입증(예 : 위임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ㅇ 신청서는 근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접수되어야 함
- ㅇ 접수일은 도착한 날을 시작으로 기산됨
- ㅇ 모든 신청서, 부속서, 진술서 및 증빙서류는 A4 크기의 서류로 작성되어야 하며 5cm 왼쪽 여백을 남기고 깔끔하고 읽기 쉽게 타이핑 또는 인쇄되어야 하며 페이지의 한면에 두줄 간격으로 표시
- ㅇ 신청인이 인도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
  - 해외 우편 및 이메일 주소
  - 인도 거주하는 대리인의 성명, 이메일 주소 및 거주 주소와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받고 관세당국에 의해 발송될 서류를 받을 권리
- ㅇ 신청은 30일 이내에 철회 할 수 있음

➔ **관세당국의 신청서 처리절차**

- ㅇ 신청이 접수 된 이후 판정관은 사본을 세관위원장 또는 세관 위원회에 전달하여야함
- ㅇ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자 및 시간을 기입
- ㅇ 신청서의 결함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결함 및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은 주어진 수정기간 내에 결함 및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령일은 수정된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 다시 기산되며, 수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거부 할 수 있음
- ㅇ 신청서가 결함이 없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
- ㅇ 신청의 거부 사유는 ① 법원 등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사안, ② 동일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원이 이미 결정을 내린 경우
- ㅇ 판정기관은 접수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전판정을 서면으로 통지
- ㅇ 신청이 판결되고 판정관의 의견을 동봉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판결 내용에 따른 청문의 기회를 부여
- ㅇ 청문회는 통상 업무시간 중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

다. 신청양식

➔ **관세 사전심사 신청양식[FORM-AAR(CUS-1)]**

➔ **관세법 개정이 2018년도에 되었으나 그 하위법인 관세규칙(Central Excise (Advance Rulings) Rules, 2002) 및 그 양식이 2002년도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양식 및 그 내용이 관세법 규정과 아직까지 불일치하므로 신청서 작성에 유의 하여야함**

➔ **관세 사전심사 신청서 양식[FORM-AAR(CUS-1)]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14] FORM-AAR(CUS-1)의 선택항목(번역)

1. 신청자 세부사항

(i) 성명

(ii) 완전한 주소

(iii) 전화번호

(iv) 팩스번호

(vi) 우편주소(상기(ii)와 다른 경우 작성

2. 지원자의 신분(해당되는 것중 하나 선택)

(i) 비거주자와 공동으로 인도에서 합작 투자를 창업하는 경우로

(a) 비거주자

(b) 거주자

(ii) 비거주자와 협력하여 인도에 합작 투자를 설립한 거주자

(iii) 지주회사가 외국회사인 인도의 자회사

(iv) 인도의 조인트벤처

(v) 중앙정부 또는 같은 급의 기관에 속하는 거주자로 언급된 통지번호가 부여된 자

(vi) 2005 년 6 월 29 일자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CECA)에 따라 싱가포르 공화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 / 수출하는 수입 / 수출업자.

3. 합작 투자 제안의 근거

(a) 양해 각서; 또는

(b) 서한의 의도

(c) 정관

(d) 기타 문서

4. 제안 된 합작 투자의 세부 사항

(i) 성명

(ii) 완전한 주소

(iii) 전화번호

(iv) 팩스번호

(vi) 우편주소(상기(ii)와 다른 경우 작성

5. 조인트 벤처를 구성하는 신청자 이외의 거주자 / 비거주자의 세부 사항

(i) 성명

(ii) 완전한 주소

(iii) 전화번호

(iv) 팩스번호

(vi) 우편주소(상기(ii)와 다른 경우 작성

6. 지분을 소유한 인도 자회사의 경우 다음 세부 사항

A. (i) 외국 지주 회사 명

(ii) 완전한 주소

(iii) 전화번호

(iv) 팩스번호

(vi) 우편주소(상기(ii)와 다른 경우 작성

B. 인도 자회사 해외 지분율

7. 합작 투자의 경우

(i) 조인트 벤처의 설립자 / 조인트 벤처의 구성

(ii) 주민 / 비거주자의 지위

(iii) 기존 활동 내용

8. 수행하려는 활동의 본질

9. 활동의 현재 상태

10. 수입자-수출자 신청자의 코드번호

11. 신청자의 영구 계좌번호 (있는 경우)

12. 사전조사가 요구되는 질문(하나만 선택)

(i) 1975년 관세율 법에 따른 **상품 분류**

(ii) 1962년 관세법 제 25 조 하위 절 (1)에 따라 발행 된 통보의 적용 가능성[4)]

(iii) 1962년 관세법의 조항에 따라 상품 가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채택 된 원칙.

(iv) 1962년 관세법의 조항에 따라 상품 가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채택 된 원칙.

(vi) 1962년 세관 법, 1962년 관세법, 1975년 관세법, 1975년 세관 관세법에 따라 발급 된 통보의 적용 가능성 및 세관에 따라 부과되는 세관 관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다른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행위

(v) 관세율법 (Customs Tariff Act), 1975에 따라 통보 된 규칙 및 관련 문제에 관한 물품의 원산지 결정

13. 질문에 관련된 관련 사실 진술서

14. 위의 질문 (즉, 신청자의 관점 및 사전 판결이 요구되는 문제에 대한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법률 및 / 또는 사실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는 진술서

15. 제기 된 질문이 세관, 항소 재판소 또는 법원의 공무원보다 먼저 신청자의 경우에 계류 중입니까? 그렇다면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 하십시오

16. 신청인이 제기 한 질문에서 제기 된 유사한 사안이 항소 재판소 또는 법원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는지 여부

17. 수입 / 수출이 제안 된 곳

18. 첨부 된 서류 / 명세서 목록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용지에 목록을 첨부

19. 신청서에 동봉 된 요청 초안의 세부 사항

4) 중앙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인 성격의 상황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특별 명령으로 면제를 면제 할 수있다.

○ **관세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작성 주의사항(번역)**

1. 신청서는 영어 또는 힌두어로, 4부 작성

2. 이 신청서에는 뉴 델리에서 지불해야하는 선관위 (중앙 소비세, 세관 및 서비스 세) 권한에 찬성하여 인도 루피 2500 달러의 계좌 수취인 명 초안이 수반되어야합니다. 초안의 세부 사항은 항목 번호 19에 관한 란에 기입해야합니다.

3. 신청서를 수령 한 날 수와 연도는 사전 통치기구 (Authorization for Advance Rulings) 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

4. 신청서의 모든 항목에 응답하기 위해 제공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 된 경우, 별도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장의 하단에는 신청인이 서명해야합니다.

5. 2번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신청인은 개인, 힌두 출자 가족 회사, 회사, 법인 연맹, 전액 출자한 자회사, 합작 투자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합니다.

6. 5번 항목의 경우, 응답은 1961년 소득세법 (1961년 43)에 따라 인도, 비거주자, 인도 회사 및 외국 회사의 "거주"에 관한 조항의 맥락에서 제공되어야합니다

7. 항목 번호 9에 대한 응답으로, 신청인은 사전 판결이 내려진 사업 활동의 현재 상태, 즉 진행 단계를 명시해야합니다.

8. 12번 항목에 관해서, 질문은 취해질 것으로 제안된 활동에 근거해야한다

9. 항목 13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관련 사실을 상세하게 명시해야하며 활동 내용과 제안 된 활동의 예상 날짜 및 목적을 공개해야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 된 문서에 반영된 관련 사실은 사실 진술서에 포함되어야하며 단순히 참조로 포함되지 않아야합니다.

10. 14번 항목의 경우, 신청인은 사전 판결이 요구되는 질문과 관련하여 법률이나 사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분명히 기술해야합니다.

11. 신청서, 그에 첨부 된 확인서, 신청서에 대한 부속서 및 부속서 1 및 2에 첨부 된 진술 및 서류는 신청인이 각 페이지에 서명해야합니다

[표 15] 사전심사 신청서 FORM-AAR(CUS-1) 원본(5page)

FORM– AAR (CUS–I)

[Application for Advance Ruling (Customs)]

(See rule 3 of the Customs (Advance Rulings) Rules, 2002)

BEFORE THE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CENTRAL EXCISE, CUSTOMS AND SERVICE TAX)

NEW DELHI

(Form of application for seeking Advance Ruling under section 28H of the Customs Act, 1962)

Application No.of.

1.	**Details of Applicant**	
	(i) Full name	:
	(ii) Complete address	:
	(iii) Telephone number(with STD/ISD code)	:
	(iv) Fax number (with STD/ISD code)	:
	(v) E-mail address	:
	(vi) Postal address (to be provided if different from (ii) above)	:
2.	**Status of the Applicant(Tick whichever is applicable)**	
	i. **(i)** a non-resident setting up a joint venture in India in collaboration with,-	
	ii. **(a)** a non-resident; or	:
	iii. **(b)** with a resident;	
	iv. **(ii)** a resident setting up a joint venture in India in collaboration with a non-resident;	:
	v. **(iii)** a wholly owned subsidiary Indian company, of which the holding company is a foreign company;	:
	vi. **(iv)** a joint venture in India;	:
	vii.	
	viii. (v) a resident falling within any such class or category of persons, as the Central Government may, by notif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specify in this behalf (mention notification number);	:
	(vi) Importer/Exporter importing/ exporting any goods from Republic of Singapore under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CECA) dated 29.06.2005.	:
3.	**Basis for claim as a proposed joint venture [ref. 2(i) &(ii) above] (furnish copy of following).**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r	:
	(b) Letter of Intent; or	:

	required (Tick whichever is applicable and provide details against ticked item):-	
	(i) classification of goods under the Customs Tariff Act, 1975;	:
	(ii) applicability of a notification issued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25 of the Customs Act, 1962, having a bearing on the rate of duty;	:
	(iii) the principles to be adopted for the purposes of determination of value of the good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ustoms Act,1962;	:
	(iv) applicability of notification issued in respect of duties under the Customs Act,1962, the Customs Tariff Act, 1975 and any duty chargeable under any other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in the same manner as duty of Customs leviable under the Customs Act;	:
	(v) determination of Origin of goods in terms of the rules notified under the Customs Tariff Act, 1975 and matters relating thereto.	:
13.	Statement of relevant facts having a bearing on the question(s) raised.	:
14.	Statement containing the applicants interpretation of law and/or facts, as the case may be, in respect of the aforesaid question(s) (i.e. applicants view point and submissions on issues on which the advance ruling is sought).	:
15.	Whether the question(s) raised is pending in the applicants case before any officer of Customs, Appellate Tribunal or any Court of Law? If so, provide relevant details.	:
16.	Whether a similar matter as raised in the question(s) by the applicant has already been decided by the Appellate Tribunal or any Court?	:
17.	Concerned Commissioner of Customs i.e. from where import/export is proposed to be undertaken.	:
18.	List of documents/statement attached, (attach the list on a separate sheet, if necessary.	:
19.	Particulars of demand draft enclosed with the application	:

	(c) Articles of Association etc.; or	:
	(d) Any other document.	:
4.	**Details of proposed joint venture**	
	(i) Full name	:
	(ii) Complete address	:
	(iii) Telephone number(with STD/ISD code)	:
	(iv) Fax number (with STD/ISD code)	:
	(v) E-mail address	:
	(vi) Postal address(to be filled if different from (ii) above)	:
5.	**Details of resident/non-resident party other than the applicant forming the Joint Venture**	
	(i) Full name	:
	(ii) Complete address	:
	(iii) Telephone number(with STD/ISD code)	:
	(iv) Fax number (with STD/ISD code)	:
	(v) E-mail address	:
	(vi) Postal address(to be filled if different from (ii) above)	:
6.	**In case of a wholly owned Indian Subsidiary Company furnish the following details:-**	
A.	(i) Name of Foreign holding company	:
	(ii) Complete address	:
	(iii) Telephone number(with STD/ISD code)	:
	(iv) Fax number (with STD/ISD code)	:
	(v) E-mail address	:
	(vi) Postal address(to be provided if different from (ii) above)	:
B.	Percentage of Foreign holding in the Indian Subsidiary Company.	:
7.	**In case of a joint venture [ref. 2(iv) above]**	
	(i) The persons forming the joint venture/ constitution of joint venture.	:
	(ii) Status of constituent persons, i.e. resident/non-resident.	:
	(iii) Existing activities if any.	:
8.	**Nature of activity proposed to be undertaken.**	:
9.	**Present status of activity.**	:
10.	**Importer-Exporter Code number of the applicant (if any).**	:
11.	**Permanent Account Number (Income Tax) of the applicant (if any).**	:
12.	**Question of Law or fact on which Advance Ruling**	

(Applicants signature)

VERIFICATION

I, _____(name in full and in block letters), son/daughter/wife of _____ do hereby solemnly declare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nformation and statements furnished in above format and in the annexure(s) thereto including the documents enclosed are correct. I am making this application in my capacity as _____ (designation). I am competent to make and verify this application.

2. I also declare that the question (s) on which the advance ruling is sought is/are not pending in my case before any Customs Authority, Appellate Tribunal or any Court.

3. Verified this.day..of.200 at .

(Applicants signature)

| ANNEXURE I

Statement of relevant facts having a bearing on the question(s) on which advance ruling is required

Place ..
Date

(Applicants signature)

ANNEXURE II

Statement containing applicant"s interpretation of law and/or facts, as the case may be, in respect of the questions(s) on which advance ruling is required

Place ..
Date

(Applicants signature)

Notes:

1. The application must be filled in English or Hindi, in quadruplicate.
2.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n account payee demand draft of Indian Rupees two thousand five hundred drawn in favour of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Central Excise, Customs &Service Tax), payable at New Delhi. Particulars of the draft should be entered in the column pertaining to

	item number 19.
3.	The number and year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will be filled in by the office of the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4.	If the space provided for answering any item in the application is found insufficient, separate sheets may be used for this purpose. Each sheet must be signed at the bottom by the applicant.
5.	In reply to item number 2 the applicant must state its status i.e. whether an individual, Hindu undivided family firm, company, firm association of persons, wholly owned subsidiary, Joint Venture or any other person.
6.	For item number 5, the reply must be given in the context of the provisions regarding "residence" in India, non resident, Indian Company, and Foreign Company as per the Income Tax Act, 1961(43 of 1961).
7.	In reply to item number 9, the applicant must state the present status of the business activity in respect of which advance ruling has been sought i.e. the stage to which it has progressed.
8.	Regarding item number 12, the question(s) should be based on the activity proposed to be under taken; hypothetical questions will not be entertained.
9.	In respect of item number 13, the applicant must state in detail the relevant facts and also disclose the nature of his activity and the likely date and purpose of the proposed activity(s). Relevant facts reflected in document submitted along with the application must be included in the statement of facts and not merely incorporated by reference.
1.	For item number 14, the applicant must clearly state his interpretation of law or facts in respect of the question(s) on which the advance ruling is being sought.
1.	The application, the verification appended thereto, the Annexures to the application and the statements and documents accompanying the Annexures 1 and 2 must be signed on each page by the applicant.

라. 불복절차

- 사전판정의 항소는 판정을 받은날 부터 60일 이내에 항소기관에 정해진 형식 및 절차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며,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0일의 추가기간 허용

2.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사이트 접속

- 주소 : (http://www.cbic.gov.in)
- 화면 상단 ①'Customs'항목을 클릭

STEP 2 메뉴 이동

- 화면 왼쪽 ①'AAR / D.G. Audit'메뉴에서 ②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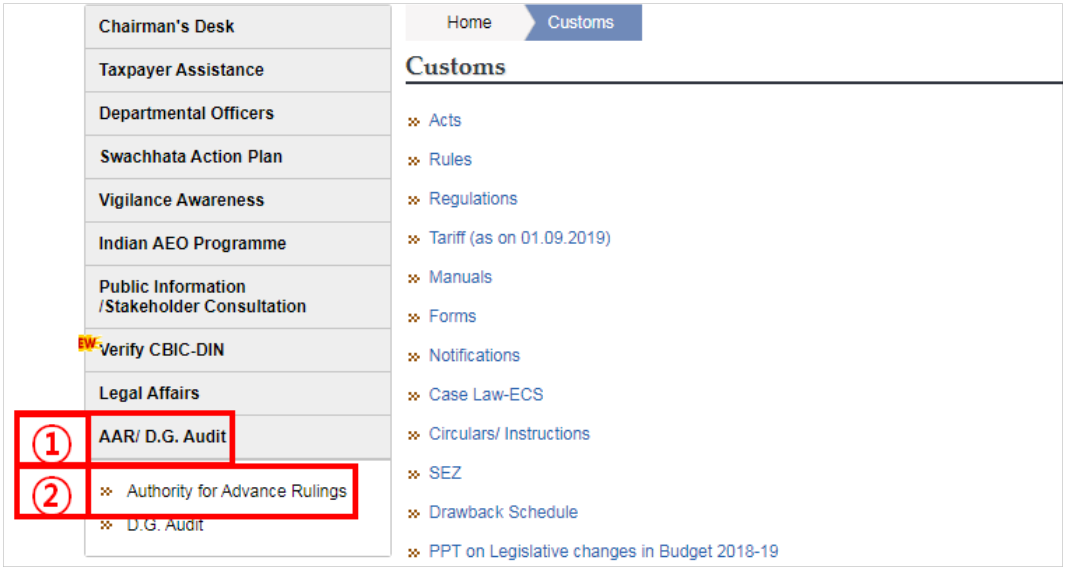

- 화면 중앙 ③'Present Status of applications received for seeking Advance Rulings (사전심사 신청 접수 현황) 클릭

STEP 3 발행연도 선택

- 조회하고자 하는 ① '연도'클릭

STEP 4 신청 접수 현황 확인

- 인도는 사전심사 신청 접수 현황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으나 상세 결정내용에 대해서 게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해당 문서는 PDF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출력 또는 저장 가능함
- 해당 문서는 신청인 정보, 신청번호 및 접수일자, 만료일자(등록일로부터 90일), 관련 내용, 당월 처리내역 등을 포함함

10.1.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Present status of Central Excise, Customs & Service Tax applications received for seeking advance rulings as on 30.09.2019

Sr. No.	Name of the Applicant	Application			Action taken during the month	Status as on 31.08.2019
		Application No. and date of receipt/ Registration	Date of expiry of 90 days period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Whether relates to Customs / CX / Service Tax.		
1	2	3	4	5	6	7
1.	M/s. Microsoft Corporation (India) Private Limited, Gurgaon, Haryana-122002.	AAR/44/CUS-I/10/2012 04.09.2012	03.12.2012	Customs	1. Comments received from Commissioner of Custom (Import), NCH, IGIA, New Delhi and Pr. Commissioner of Customs (Air Cargo Complex),Sahar , Andheri (East), Mumbai sent to the applicant for information on 12.11.2018. 2. Hearing on merits fixed for 20.07.2018 was adjourned due to non-availability of Member (Customs)	Matter to be heard
2.	M/s. Datacard India Private Limited, Mumbai-400102.	AAR/44/CUS-I/07/2013 16.05.2013	15.08.2013	Customs	**1. Reserved for Ruling vide Auth. Order dated 23.03.2018.** 2. Reply sent to the applicant in this regard vide this office letter dated 17.04.2019.	Pending
3.	M/s. ELG India Private Limited, Mumbai – 400072.	AAR/44/CUS-I/24/2013 15.10.2013	14.01.2014	Customs	**1. Reserved for Ruling vide Auth. Misc. Order dated 27.10.2017.** 2. Written submissions in pursuant to Auth. Misc. Order dated 27.10.2017 received from DR (CESTAT) on 15.03.2019 and sent to applicant vide this office letter dated 08.04.2019 3. Request for passing a ruling received from the applicant on 08.05.2019 and reply sent to the applicant in this regard vide this office letter dated 20.05.2019	Pending

03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1.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 세부절차

사전심사의 종류	① 품목분류, ② 원산지, ③ 과세가격
신청인	수출입 예정인 물품의 세관신고인
신청시기	수출입 예정 90일전
처리기간	일반적인 경우 30일,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60일
처리기관	관세총국(관세청)
유효기한	3년
신청 수수료	없음
신청기관	성, 도시 세관에 접수

가. 사전심사의 신청인 및 신청기관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은 관세법 제28조 1항에 규정된 것처럼 수출입 예정인 물품의 세관신고인으로 규정**

o 관세법 제1장 일반 정의 제4조 용어의 정의 제14항을 보면 세관신고인이란 물품의 소유자, 차량의 소유자, 차량의 운행자 그리고 물품의 소유자와 차량의 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16] 베트남 관세법(54/2014/QH13) 제1장 제4조 제14항 신고인의 정의

14. Customs declarants include goods owners; vehicle owners; vehicle operators; customs brokers and persons authorized by goods owners or vehicle owners to formalities follow customs formalities.

➔ **사전심사의 신청기관은 우리나라 관세청격인 관세총국에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사전심사 세부 절차

➔ 사전심사 심사기관

○ 관세법에 규정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법 규정에 맞는 사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베트남 관세총국에 제출

➔ 관세당국의 신청서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사전심사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 증서, 서류를 제공하여야함

- 01/XDTMS/2013 양식에 따라 작성된 사전심사 신청서 원본 1부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외국물품 구매계약서 사본 1부
- 구성요소, 유틸리티, 용도 등 사전심사 대상 품목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기술문서 1부
-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상 품목의 카다로그 또는 이미지 사본 1부
- 관세총국의 요청에 따라 물품의 샘플이 요구되는 경우 샘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관한 서류 목록 원본 1부

➔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거부 사유

○ 품목분류 사전심사 구비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 국가 기관의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건에 대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에 기재된 물품이 관할 국가기관의 조사, 감사, 검사 중에 해당됨을 통보하는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에 기재된 물품이 관세총국에 접수되어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국가관리 기관의 품목분류에 관한 지침 문서가 이미 존재하는 품목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에 기재된 물품

➔ 사전심사 결정 절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의 절차

-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서 양식에 따라 완전한 정보를 기입하여야 함
- 세관통관 절차 진행 예정지인 성(省)[5], 도시 세관국에 물품을 수출입 하기 전 최대 90일 이내 제출

[표 17] 베트남 세관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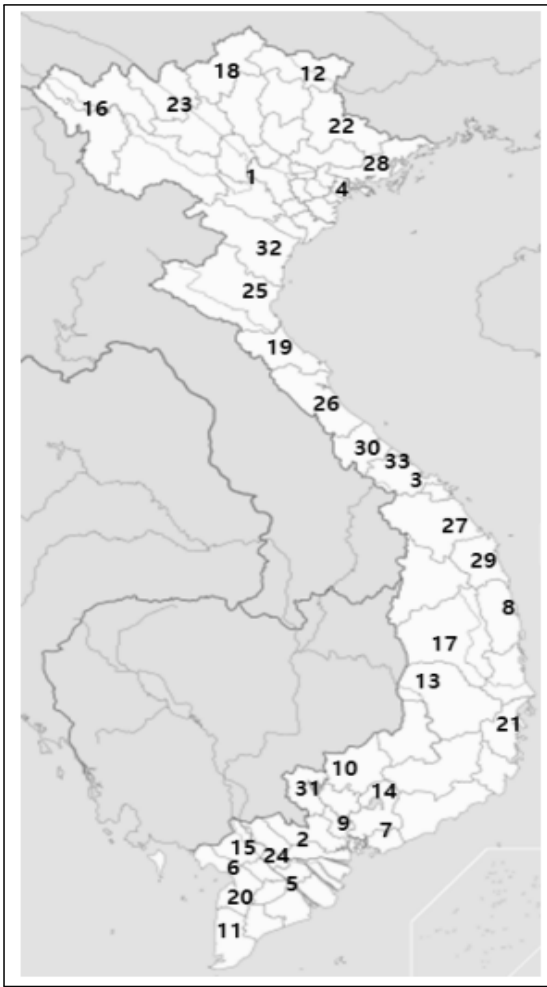

	세관이 있는 지역
1	하노이(Hà Nội)
2	호치민(HCM)
3	다낭(ĐàNẵng)
4	하이퐁(Hải Phòng)
5	칸토(Cần Thơ)
6	안장(An Giang)
7	바리아-붕타우(Bà Rịa-Vũng Tàu)
8	빈딘(Bình Định)
9	빈증(Bình Dương)
10	빈 푸옥(Bình Phước)
11	카마우(Cà Mau)
12	까오방(Cao Bằng)
13	닥락(Đắk Lắk)
14	동나이(Đồng Nai)
15	동탑(Đồng Tháp)
16	디엔비엔(Điện Biên)
17	꼰뚬(Gia Lai-Kon Tum)
18	하안장(Hà Giang)
19	하띤(Hà Tĩnh)
20	키엔지앙(Kiên Giang)
21	칸호아(Khánh Hoà)
22	랭선(Lạng Sơn)
23	라오까이(Lào Cai)
24	롱안(Long An)
25	네안(Nghệ An)
26	꽝빈(Quảng Bình)
27	꽝남(Quảng Nam)
28	꽝닌(Quảng Ninh)
29	꽝나이(Quảng Ngãi)
30	꽝찌(Quảng Trị)
31	떠이닌(Tây Ninh)
32	딴호아(Thanh Hoá)
33	뚜아띠엔(Thừa Thiên)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 베트남 2016

5) 베트남의 행정 구역은 3단계로 성(베트남어: Tỉnh/ 省, 제1급 행정구), 현(베트남어: huyện/ 縣, 제2급 행정구), 사(베트남어: xã/ 社, 제3급 행정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내용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완하여 세관국 또는 관세총국에 제공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의 기한내에 세관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한 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함
- 사전심사 결정서가 3년의 유효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물품의 정보, 자료, 견본 및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 변경이 없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연장을 관세총국에 요청할 수 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세관기관의 절차

- 성(省), 도시 세관기관은 신청 서류를 검사하고 처리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서식에 관련 정보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 근무일 내에 세관기관은 신청인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고 사전심사 서류를 반려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구비되고 신청서에 모든 정보가 기입된 경우 구비된 서류 접수일로부터 5 근무일 내에 세관기관은 사전심사 신청 품목의 품목분류 의견, 사유, 근거를 명기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신청서를 첨부 후 관세총국에 송부하여 관세총국이 검토, 해결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함
- 이때 서류 및 처리 결과는 세관기관 데이터 베이스에 갱신됨

➔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세총국의 절차

- 관세총국은 성(省), 도시 세관기관의 서류, 신청서를 검사하고 처리함
- 성(省), 도시 세관기관이 송부한 서류의 접수일로부터 25 근무일(통상적인 경우) 내 또는 최대 90 근무일(분석, 감정을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복잡한 물품의 경우) 내에 관세총국 총국장은 제02/TB-XĐTMS/2013호 서식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 통보문서를 공포함
- 사전심사 결과 통보문서는 신청인, 세관기관에 송부되고 세관기관의 데이터 베이스에 갱신되며 관세총국의 웹사이트 상에 공개됨

- 성(省), 도시 세관기관이 송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처리과정 중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견본이 필요한 경우 관세총국은 구비된 서류를 성(省), 도시 세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5 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자료 또는 물품의 견본을 보완하도록 서면 통보 함
- 이 경우 물품에 대한 감정증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총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감정을 의뢰하여 관세총국에 감정증서의 보완한 내용을 송부하기 위해 각 전문분야 관리부의 기술용역활동 사업단체 또는 감정용역 사업단체에 견본을 송부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처리기한은 신청인이 추가로 보완한 모든 정보, 자료, 견본(물품 또는 감정증서)을 관세총국에 접수한 날부터 기산함
-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 심사기관의 판정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심사기한은 외국과의 체결한 합의에 따르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의 처리기한은 외국 심사기관의 판정결과를 관세총국에서 접수한 날부터 기산함
- 관세총국의 총국장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보문서 적용 연장을 검토 할 수 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보문서의 효력

- 실제 수출입 물품 또는 서류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서류와 다른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보문서는 적용 효력이 없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보 문서는 관세총국의 총국장이 공표한 날로부터 최대 3년 동안 효력을 가짐
- 제공한 정보, 자료, 물품 견본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보문서의 공포 근거에 관한 변경없이 3년의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관세총국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적용연장을 검토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보 문서가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총국 총국장은 제03/TT-XĐTMS/2013호 서식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보서를 개정 대체하는 문서를 공포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보문서의 공포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이 개정, 보완 교체되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보문서의 효력은 종료됨
- 효력의 종료기한은 품목번호 사전확정 결과 통보문서의 공포 근거가 되는 개정, 보완, 또는 교체된 법률 규정이 효력을 갖는 날임
- 신청인이 제공한 품목번호 사전 확정 서류의 부정확성, 불성실성이 발견되는 경우 관세총국의 총국장은 품목번호 사전심사 결정 통보문서를 취소하는 문서를 공포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보문서는 세관신고서상 품목분류 신고를 위한 근거가 되며 세관절차 진행 시 세관서류와 함께 제출 됨
- 관세총국의 총국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은 재무부가 검토, 해결하도록 서면으로 건의함

➔ 재심사

-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는 관세총국에 서면으로 검토를 요청
-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10일 또는 필요한 경우 30일 근무일 내 관세총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회신

다. 신청양식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양식(제01/XĐTMS/TXNK호 서식)

➔ 베트남 관세법「세관절차, 세관검사·감독,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세 및 세금관리에 관한 통자」제7조 제1항 a에서 규정된 품목분류 사전심사 서식에 따라 신청인은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 하여야 함

➔ **항목별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8] 베트남 사전심사 신청양식(제01/XĐTMS/TXNK호)

A.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 하는 개인, 단체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4. 팩스번호
5. 세무코드

B.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

6. 상업명칭
7. 구조, 용도에 따른 명칭
8. 물품 기호, 번호, 종류
9. 생산자

C.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세부 정보

10. 성분, 구조, 화학식
11. 운영체제, 사용방식
12. 중량별 함량
13. 기술사양
14. 생산과정
15. 설계에 따른 용도
16. 물품에 관한 기타 정보

a) 통자 제38/2018/TT-BTC호의 제1조제3항제4호제b목 규정에 따라 국가관리기관의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있음, 없음)

* “있음”란에 표시하는 경우, 물품에 관련된 서류의 수리업무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조사기관의 코드번호, 지침문서번호, 문서번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b) 물품의 수출입 예정시간(거래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번호 사전확정을 신청하는 개인, 단체가 품목번호 사전확정을 신청한 물품의 현행 규정에 따라 외국과의 매매계약서상 물품의 수출입 예정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D.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각 자료

17. 물품 견본(있음, 없음)

18. a) 카다로그(체크박스) b) 이미지(체크박스)

19. 기술자료

20. 성분, 구조, 물리·화학적 특성, 용도의 확정을 위한 기계, 기술설비의 사용이 필요한 품목번호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견본에 대한 감정증서(있음, 없음)

21. 관련자료, 자료의 종류 명시(있는 경우에 한함), (있음, 없음)

Đ.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개인, 단체의 의견

22. (베트남 수출입물품 목록에 따른) 신청 품목번호

23. 신청근거

E. 기타의 내용(있는 경우에 한함)

[표 19]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서 원본(제01/XĐTMS/TXNK호 서식)

Mẫu số 01/XĐTMS/TXNK

TÊN TỔ CHỨC, CÁ NHÂN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Số:...../.....

....., ngày ..... tháng ..... năm .....

ĐƠN ĐỀ NGHỊ

Về việc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Kính gửi:.....

A. Tổ chức, cá nhân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1. Tên:	
2. Địa chỉ:	
3. Điện thoại:	4. Fax:
5. Mã số thuế:	

B. Hàng hóa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6. Tên thương mại:	
7. Tên gọi theo cấu tạo, công dụng:	
8. Ký, mã hiệu, chủng loại:	9. Nhà sản xuất:

C. Mô tả chi tiết hàng hóa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10. Thành phần, cấu tạo, công thức hóa học:
11. Cơ chế hoạt động, cách thức sử dụng:
12. Hàm lượng tính trên trọng lượng:
13. Thông số kỹ thuật:
14. Quy trình sản xuất:
15. Công dụng theo thiết kế:
16. Các thông tin khác về hàng hóa: *a) Trường hợp đang chờ kết quả xử lý của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tại tiết b điểm 4 Khoản 3 Điều 1 Thông tư số 38/2018/TT-BTC* *Có □ Không □* *Trường hợp đánh dấu vào ô "có", đề nghị nêu cụ thể mã số, số văn bản hướng dẫn, số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cơ quan điều tra về việc đang thụ lý hồ sơ liên quan đến hàng hóa.* *b) Thời gian dự kiến xuất khẩu, nhập khẩu hàng hóa (nêu cụ thể thời điểm dự kiến xuất khẩu nhập khẩu hàng hóa trên hợp đồng mua bán với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hiện hành của hàng hóa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do tổ chức, cá nhân có đơn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trực tiếp thực hiện giao dịch)*

D. Các tài liệu có liên quan đến hàng hóa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17. Mẫu hàng hóa:	Có □ Không □
18. a) Catalogued	b) Hình ảnh □

19. Tài liệu kỹ thuật	Có □ Không □
20. Chứng thư giám định đối với mẫu hàng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cần phải sử dụng máy móc, thiết bị kỹ thuật để xác định thành phần, cấu tạo, tính chất lý, hóa, công dụng.	Có □ Không □
21. Tài liệu có liên quan, ghi rõ loại tài liệu (nếu có)	Có □ Không □

Đ. Ý kiến của tổ chức, cá nhân về mã số đối với hàng hóa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22. Mã số đề nghị (theo Danh mục hàng hóa xuất nhập khẩu Việt Nam):
23. Cơ sở đề nghị:

.....(Tên tổ chức, cá nhân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cam đoa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ính chính xác, trung thực của các thông tin, tài liệu, mẫu hàng hóa cung cấp cho cơ quan Hải quan để thực hiện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E. Nội dung khác ***(nếu có)*:**

TỔ CHỨC, CÁ NHÂN
(Ký, ghi rõ họ tên, đóng dấu)

2.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검색방법

STEP 1 사이트 접속

- 주소 : (https://dncustoms.gov.vn/) 베트남 동나이 세관국
- 화면 상단 ①'THỦ TỤC HẢI QUAN(세관 절차)'항목을 클릭

STEP 2 메뉴 이동

- 화면 왼쪽 ①'Hướng dẫn khác(기타 지침)'메뉴에서 ② 'Phân loại - Giám định hàng hóa(분류-상품 검사)' 클릭

STEP 3 상세 검색

- 화면 중앙 ① 검색 박스에 키워드를 입력 후 ② 검색 아이콘 클릭

STEP 4 검색 결과 확인

- 검색 결과 왼쪽부터 문서번호, 일자, 물품명 항목임
-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① '열' 클릭

	Số hiệu	Ngày văn bản	Tiêu đề
	6908/TCHQ-TXNK	04/11/2019	Xác định mã HS code bộ đèn LED (Công ty TNHH Minh Thành)
①	6670/TCHQ-TXNK	23/10/2019	Mã HS mặt hàng Lignocel (Công ty TNHH Bia Anheuser-Busch Inbev Việt Nam)
	6437/TCHQ-TXNK	10/10/2019	Phân loại mặt hàng Polyol blend trộn lẫn HCFC (HQ Hồ Chí Minh; Công ty TNHH Sanex Marketing Việt Nam)
	6258/TCHQ-TXNK	01/10/2019	Phân loại hàng hóa mặt hàng đầu nối dạng thanh (Công ty TNHH Kanetsu Việt Nam)
	6277/TCHQ-TXNK	01/10/2019	Mã HS hàng hóa mặt hàng bánh nhám từ sợi nylon dùng để đánh bóng ống thép không gỉ (Công ty cổ phần Quốc tế Đại Dương O S S)
	6173/TCHQ-TXNK	26/09/2019	Phân loại hàng hóa mặt hàng dây thép (Công ty cổ phần Công trình 6)

STEP 5 결정서 확인

- 해당 물품의 결정 상세 내역이 있는 화면으로 전환됨
- 결정서는 문서번호, 유효기간, 세번, 분류근거, 관련 법규 등 물품 정보 등을 포함함

04

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1. 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세부 절차

사전심사의 종류	과세가격, 원산지, 품목분류
신청인	수입예정인 물품으로 사전심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자로 수출입업자로 등록된자
신청시기	수입계획이 있는 경우 수입30일전, 구체적인 수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 60일 전
처리기간	수입계획 유무에 따라 30일(유)/60일(무)
처리기관	관세청 관세율국
유효기한	2년
신청 수수료	2,000바트

가. 사전심사 절차

➔ 신청인

○ 사전심사 신청인은 법규상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신청 조건에서 「수입예정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예정(확정 또는 미확정)인 물품으로 사전심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자」로 해석 할 수 있음

○ 신청인은 태국 관세청에 수출입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다음과 같이 등록 요청 양식(전자 통관 실무자 등록 신청서) 및 / 또는 첨부 제출해야 함

  1) 인터넷으로 '온라인 방문자 등록 시스템'에 등록 요청

  2) 종이 등록 양식을 세관 또는 승인된 기관에 제출

- 정부기관, 국영기업, 대사관, 공공자선단체 또는 납세자식별번호가 없는 다른 조직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및 수출 등록 부서에서 요청 양식을 수동으로 제출해야 함

〈수출입업자 등록 제출 자료〉

1. 승인된 서명자의 신원 확인 서류

   1-1. 태국인인 경우 원본 신분증 또는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과 식별 번호가 있는 그 밖의 신분증 등

   1-2. 외국인인 경우 여권 원본 또는 실제 외국인 ID카드 등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권한 위임장

3. 서명이 표기된 요청서 사본

[표 19] 태국 전자 통관 실무자 등록 신청서(원본)

แบบคำขอหมายเลข 1
แนบท้ายประกาศกรมศุลกากรที่ ๖๔/๒๕๖๑
ทะเบียนรับเลขที่.....
สถานที่รับ.....
วันเดือนปีที่รับ.....
เจ้าหน้าที่ผู้รับ.....

แบบคำขอลงทะเบียนผู้ปฏิบัติพิธีการศุลกากร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ยื่นต่อ อธิบดีกรมศุลกากร ผ่าน ☐ ฝ่ายทะเบียนผู้นำเข้าและส่งออก ส่วนทะเบียนและสิทธิพิเศษ
☐ สำนักงานศุลกากร.....
☐ ด่านศุลกากร.....

กรณีเป็นนิติบุคคลหรืออื่น ๆ *(อื่น ๆ เช่น ห้างหุ้นส่วนสามัญไม่จดทะเบียน ร้านค้า หน่วยงานราชการ ฯลฯ)*
ข้าพเจ้า (ชื่อ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ภาษาไทย).....
(ชื่อ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ภาษาอังกฤษ).....
ประเภทของกิจการ ☐ บจก. ☐ บมจ. ☐ หจก. ☐ หสน. ☐ ร้าน ☐ อื่น ๆ .....
เลขประจำตัวผู้เสียภาษีอากร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๑๓ หลัก)
☐ สำนักงานใหญ่ ☐ สาขา (ตามที่ระบุใน แบบ ภ.พ.๒๐) .....
เลขทะเบียนนิติบุคคล เลขที่.....
วันที่จดทะเบียน __ __/__ __/__ __ __ __ ทุนจดทะเบียน.....บาท
วันที่ออก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 (ถ้ามี) __ __/__ __/__ __ __ __ ชื่อประเทศแม่.....

กรณีเป็นบุคคลธรรมดา
ข้าพเจ้า ☐ นาย/ MR. ☐ นาง/ MRS. ☐ นางสาว/ MISS ☐ อื่น ๆ/ OTHERS.....
(ภาษาไทย) ชื่อ..... นามสกุล.....
(ภาษาอังกฤษ) ชื่อ..... นามสกุล.....
☐ 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ประชาชน ☐ 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 ☐ ใบสำคัญประจำตัวคนต่างด้าว เลขที่.....

ที่อยู่
เลขที่.....อาคาร.....ตรอก/ซอย.....หมู่ที่.....
ถนน.....แขวง/ตำบล.....เขต/อำเภอ.....
จังหวัด.....รหัสไปรษณีย์.....โทรศัพท์.....
โทรสาร.....e-mail.....

หมายเหตุ - กรณีมีการยกเลิก เพิ่มเติม หรือ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มูลทะเบียนใด ผู้ลงทะเบียนมีหน้าที่ต้องยื่นแบบคำขอ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มูลทะเบียน เพื่อให้ข้อมูลทะเบียนเป็นปัจจุบัน
- กรณีผู้ลงทะเบียนไม่แจ้ง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มูลทะเบียนให้เป็นปัจจุบัน อาจต้องรับผิดทั้งทางแพ่งและหรือทางอาญา

หน้า ๑/๓

แบบคำขอหมายเลข 1

แนบท้ายประกาศกรมศุลกากรที่ ๖๔/๒๕๖๑

๑. ขออนุญาตยื่นปฏิบัติพิธีการศุลกากร และชำระภาษีอากร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๒. ขอลงทะเบียนเพิ่มเติม *(ถ้ามี)* ดังต่อไปนี้

☐ **มอบอำนาจให้ผู้รับมอบอำนาจกระทำการแทน**
(ให้ใช้ แบบแนบ ก หากประสงค์จะกำหนดให้ผู้ลงนามในแบบคำขอลงทะเบียนนี้ หรือบุคคลอื่น ดำเนินการในกระบวนการทางศุลกากร เช่น การปฏิบัติพิธีการศุลกากรโดยใช้บริการเคาน์เตอร์บริการ หรือการขอคืนอากร เป็นต้น)

☐ **มอบอำนาจให้ผู้รับมอบอำนาจกระทำการแทนในการขอรับเงินชดเชยค่าภาษีอากรสำหรับสินค้าส่งออก**
(ให้ใช้ แบบแนบ ข หากประสงค์จะมอบอำนาจให้ผู้รับมอบอำนาจกระทำการแทนดำเนินการเกี่ยวกับการขอรับเงินชดเชยค่าภาษีอากรสำหรับสินค้าส่งออก)

☐ **ลงทะเบียนตัวแทนออกของ (Customs Broker) ผู้รับมอบอำนาจ**
(ให้ใช้ แบบแนบ ค หากประสงค์จะแจ้งรายชื่อตัวแทนออกของที่ใช้บริการในการปฏิบัติพิธีการศุลกากร)

☐ **ลงทะเบียนพนักงาน/ ลูกจ้าง**
(ให้ใช้ แบบแนบ ง หากประสงค์จะแจ้งข้อมูลพนักงาน/ ลูกจ้างเพื่อดำเนินการ เช่น การขอจำลองใบเสร็จ หรือใช้เป็นข้อมูลในการสมัครระบบ e-Tracking เป็นต้น)

☐ **ลงทะเบียนธนาคารเพื่อการขอชำระภาษีอากร และ/หรือ ขอคืนเงินอากร**
(ให้ใช้ แบบแนบ จ หากประสงค์จะใช้บริการ e-Payment เพื่อขอชำระภาษีอากร/ ขอคืนเงินอากร)

☐ **ลงทะเบียนศูนย์บริหารเงินทำหน้าที่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เงินตร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แทน**
(ให้ใช้ แบบแนบ ฉ หากประสงค์จะใช้บริการศูนย์บริหารเงินทำหน้าที่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เงินตร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แทน)

☐ **ขอทำการรับส่งข้อมูลการปฏิบัติพิธีการศุลกากร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ให้ใช้ แบบแนบ ช หากประสงค์จะส่งข้อมูลใบขนสินค้า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ด้วยตนเอง)

๓. กรณีข้าพเจ้าฯ ได้ใช้บริการของตัวแทนออกของ (Customs Broker) ผู้ซึ่งได้รับอนุญาตจากกรมศุลกากรให้เป็นผู้บริการรับส่งข้อมูล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ในการปฏิบัติพิธีการศุลกากรและการชำระภาษีอากรกับกรมศุลกากร ข้าพเจ้าฯ ยินยอมรับผิดชอบในการกระทำของตัวแทนออกของในทุกกรณี

๔. การปฏิบัติพิธีการศุลกากร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ซึ่งข้าพเจ้าฯ ส่งข้อมูล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ให้กรมศุลกากรทดแทนเอกสารใด ๆ ก็ตาม และกรมศุลกากรได้ตอบรับข้อมูล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นั้นในการปฏิบัติพิธีการแล้ว ถือเป็นการยื่นเอกสารนั้น ๆ ตามนัย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๖๐ หรือตาม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ชดเชยค่าภาษีอากรสินค้าส่งออกที่ผลิตใน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 พ.ศ. ๒๕๒๔ หากการส่งข้อมูลเป็นความเท็จ หรือเป็นความไม่บริบูรณ์ หรือเป็นความซักพาให้ผิดหลงในรายการใด ๆ หรือเป็นการฝ่าฝืนบทบัญญัติของกฎหมายใด ๆ ก็ตาม ข้าพเจ้าฯ ยินยอมให้นำข้อมูลดังกล่าวไปเป็นหลักฐานในการพิจารณาดำเนินคดีตามกฎหมายศุลกากรหรือกฎหมายอื่น ๆ ที่เกี่ยวข้อง

๕. บรรดาระเบียบ ประกาศ ข้อบังคับ คำสั่ง หรือกฎหมายใด ๆ ที่กำหนดให้ผู้นำของเข้า ผู้ส่งของออก ตัวแทนออกของ นายเรือ หรือตัวแทนเรือ หรือตัวแทนของบุคคลดังกล่าว มีหน้าที่เก็บและรักษาบัญชีเอกสาร หลักฐาน และข้อมูลไม่ว่าในสื่อรูปแบบใด ๆ หรือมีหน้าที่ยื่นหรือแสดงหรือส่งเอกสารใด ๆ อันเจ้าหน้าที่เรียกให้ยื่นหรือแสดงหรือส่งนั้น ข้าพเจ้าฯ ยินยอมให้ใช้บังคับสำหรับข้อมูล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ที่ข้าพเจ้าฯ หรือตัวแทนส่งให้กรมศุลกากร

หมายเหตุ - **กรณีมีการยกเลิก เพิ่มเติม หรือ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มูลทะเบียนใด ผู้ลงทะเบียนมีหน้าที่ต้องยื่นแบบคำขอ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มูลทะเบียน เพื่อให้ข้อมูลทะเบียนเป็นปัจจุบัน**
- **กรณีผู้ลงทะเบียนไม่แจ้ง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มูลทะเบียนให้เป็นปัจจุบัน อาจต้องรับผิดทั้งทางแพ่งและ/หรือทางอาญา**

หน้า ๒/๓

รวมทั้งให้พิจารณาดำเนินคดีตามกฎหมาย ในกรณีที่มีการฝ่าฝืนระเบียบ ประกาศ ข้อบังคับ คำสั่ง หรือกฎหมายดังกล่าวด้วย

๖. ข้าพเจ้าฯ ยินยอมปฏิบัติตามระเบียบ ประกาศ คำสั่ง และหลักเกณฑ์ของกรมศุลกากร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การปฏิบัติพิธีการศุลกากรอย่างครบถ้วนและเคร่งครัด หากข้าพเจ้าฯ กระทำการใดอันเป็นการฝ่าฝืนระเบียบ ประกาศ คำสั่งและหลักเกณฑ์ดังกล่าว ข้าพเจ้าฯ ยินยอมให้กรมศุลกากรงดรับปฏิบัติพิธีการศุลกากรและถูกพิจารณาดำเนินคดีตามที่กฎหมายกำหนด

ทั้งนี้ ข้าพเจ้าขอรับรองว่ารายการที่แจ้งไว้ข้างต้นเป็นรายการที่ถูกต้องสมบูรณ์ทุกประการ

ลงชื่อ.....

(.....)

ผู้มีอำนาจลงนาม

ประทับตรา
นิติบุคคล
(ถ้ามี)

ยื่นวันที่.....

ลงชื่อ.....

(.....)

ผู้มีอำนาจลงนาม

ยื่นวันที่.....

ลงชื่อ.....

(.....)

ผู้มีอำนาจลงนาม

ยื่นวันที่.....

สำหรับเจ้าหน้าที่

ความเห็นเจ้าหน้าที่

.....

.....

.....

คำสั่ง

☐ อนุญาต ตั้งแต่ ..... เป็นต้นไป

☐ ไม่อนุญาต

ลงชื่อ.....

(.....)

เจ้าหน้าที่

วันที่.....

ลงชื่อ.....

(.....)

ผู้มีอำนาจลงนาม

วันที่.....

หมายเหตุ - **กรณีมีการยกเลิก เพิ่มเติม หรือ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มูลทะเบียนใด ผู้ลงทะเบียนมีหน้าที่ต้องยื่นแบบคำขอ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มูลทะเบียน เพื่อให้ข้อมูลทะเบียนเป็นปัจจุบัน**

- **กรณีผู้ลงทะเบียนไม่แจ้ง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มูลทะเบียนให้เป็นปัจจุบัน อาจต้องรับผิดทั้งทางแพ่งและหรือทางอาญา**

[표 20] 태국 전자 통관 실무자 등록 신청서(번역본)

신청 양식 :
관세청 제 64/2561 호 공고 첨부

등록번호.....
접수장소.....
접수일자.....
접수인.....

전자 통관 실무자 등록 신청서

☐ 수출입 등록과 등록 및 특별 권한
☐ 세관.....
☐ 관세청.....

다음 기관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 문서를 제출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의 경우 (일반적인 합명회사, 비등록 회사, 정부 기관 등)

명칭 (태국어).....
(영어).....

사업 유형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합명회사 ☐ 합명회사 ☐ 회사 ☐ 기타.....

납세자식별번호 _ _ _ _ _ _ _ _ _ _ _ _ _ (13자리)

☐ 본사 ☐ 지점 .....

회사등록번호.....

등록일자 _ _ / _ _ / _ _ _ _ 등록자본.....바트

인증서 발급일(있는 경우) _ _ / _ _ / _ _ _ _ 국가명.....

개인인 경우

명칭 ☐ 미스터/ MR. ☐ 미즈/ MRS. ☐ 미스/ MISS ☐ 기타/ OTHERS.....

(태국어) 이름.....성(ถ้ามี).....

(영어) 이름.....성(ถ้ามี).....

☐신분증명카드 ☐ 여권 ☐ 외국인신분증명번호.....

주소

번호.....건물명.....도로명.....동.....

도로명 .....하위 지역.....지구.....

주.....우편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이메일 주소.....

참고 **등록 정보의 취소, 추가 또는 변경 시 등록자는 등록 정보가 최신 상태가 되도록 등록 정보 변경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자가 등록 정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민사 및 / 또는 형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หน้า ๑/๑

1. 통관 허가 신청 및 전자 관세 납부

2. 다음과 같은 추가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 **변호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

*(해당 신청의 서명권자 또는 다른 사람이 통관 등 절차 수행/서비스 카운터 사용/ 관세 환급을 요청하려면 **양식 A**를 사용하십시오)*

☐ **수출물품에 대한 보상 청구를 대리인이 대신 행동할 권한을 부여**

*(수출업무에 대한 보상 요청을 대리인이 대리하도록 허가하려면 **양식 B**를 사용하십시오)*

☐ **관세사 등록**

*(관세사의 성명을 등록하려면 **양식C**을 사용하십시오)*

☐ **직원 등록**

*(영수증 요청 또는 e-Traking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는 등 직원 이 처리 할 정보를 제공하려면 첨부 파일 **양식D**을 사용하십시오)*

☐ **세금 요청 및 / 또는 환불 업무를 위해 은행을 등록하십시오.**

*(e-Payment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 / 환불 업무를 요청하려면 **양식E**을 사용하십시오)*

☐ **외화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센터 등록**

*(재무관리센터를 이용하여 외화를 관리하려면 **양식F**를 사용하십시오)*

☐ **통관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내고 받도록 요청**

*(전자신고정보를 직접 제출하려면 **양식G**을 사용하십시오)*

3. 관세사를 통하여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수출 대행하는 경우 통관 및 관세 납부와 관련한 모든 경우에 관세사의 행동에 책임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4. 전자통관절차에 따라 전자 문서를 세관에 전송하여 교체하는 경우, 세관은 세관 절차에 따라 전자자료를 수신하고 이는 관세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간주됩니다. 관세법 B.E. 2560 또는 B.E. 2524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허위 또는 불완전하거나 어떤 항목에서 오도하여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소송을 위한 근거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5. 수입업자, 수출업자, 수출업자, 조선업자 또는 선박 대표 또는 그 대표자는 모든 규칙, 공지, 규정, 명령 또는 법률에 필요한 경우 계정, 문서, 증거 및 정보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출/열람/전달하기 위해 요청한 문서(모든 형태의 미디어)에 대하여 전자정보시스템 또는 세관중개인이 세관에 해당 문서를 전송함에 있어서 규칙, 통지, 규정, 명령 또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6. 규정, 공지사항, 명령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완전하고 엄격한 상기 명령과 기준을 선언함으로써, 통관 관련 세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세관 수속 중단과 법에 따라 기소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참고 -등록 정보의 취소, 추가 또는 변경 시 등록자는 등록 정보가 최신 상태가 되도록 등록 정보 변경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자가 등록 정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민사 및 / 또는 형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หน้า ๒/๓

신청 양식 :
관세청 제 64/2561 호 공고 첨부

이와 관련하여 상기 목록이 완전히 정확함을 보증합니다.

서명.....

(.....)

공인된 자

제출일자.....

서명.....

(.....)

공인된 자

제출일자.....

서명.....

(.....)

공인된 자

제출일자.....

직원

의견 책임자

.....

.....

.....

사령부

☐ 허용 ..... 이후

☐ 불허

서명.....

(.....)

장교

날짜.....

서명.....

(.....)

공인된 자

날짜.....

참고 **등록 정보의 취소, 추가 또는 변경 시 등록자는 등록 정보가 최신 상태가 되도록 등록 정보 변경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자가 등록 정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민사 및 / 또는 형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หน้า ๓/๓

➔ 신청기관

ㅇ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청 관세율국[6]에 신청을 하여야 함

- 관세율국에서 품목분류 사전신청 심사는 품목분류 1, 2, 3, 4과에서 담당(관세율국은 원산지 기준과, 세율구조과, 국제관세율과, 이의신청과, 분석실, 품목분류 1, 2, 3, 4과의 9개과로 구성)

➔ 신청 유형 및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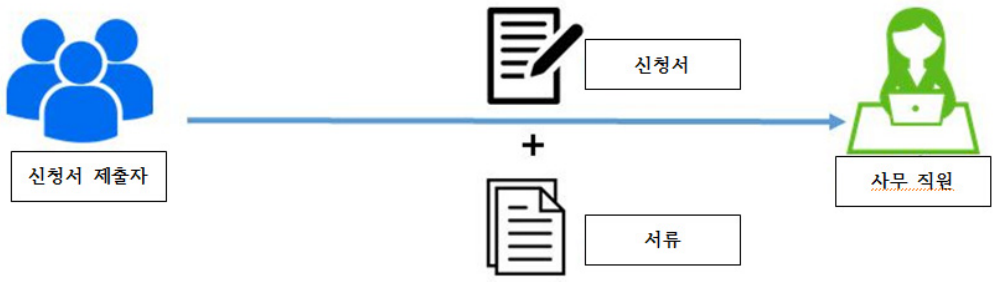

ㅇ 사전심사 신청은 수입계획이 확정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됨

- 수입계획이 확정된 경우는 수입예정임을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30일 전에 신청 가능

· 신청서 1부는 1종류의 물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만약 물품의 개수가 1종류 이상인 경우 문의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에 따라 신청서를 분리 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시 해설서 및 태국어 요약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모든 서류에 대한 공증을 하여야 함

- 수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 60일 전에 신청가능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통하여 타인이 제출할 수 있음

6) : www.customs.go.th

ㅇ 신청서 제출 조건

- 하나의 신청서는 하나의 물품/모델/규격에 대하여 신청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신청 물품이 하나 이상인 경우 물품의 수에 따라 신청서를 별도로 준비 하여야함
- 신청서 제출은 양식에 따라 신청 물품에 대한 태국어로 작성된 세부 설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설명서는 관세청 공고에 따라 작성하고 그 이외의 자료의 경우 모든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함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자료 송부의 행위로 공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21] 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출서류

물품 설명 세부 항목		
①물품명/거래상 명칭/상표/모델	② 물품의 특성	③ 성분
④ 생산 법칙	⑤ 제작 방법	⑥ 화학 구조
⑦ 제작방법	⑧ 작동 방식	⑨ 샘플
⑩ 사전	⑪ 카달로그	⑫ 분석결과
⑬ 기존에 세율울 분류 했던 유사/동일 제품과 관련된 자료		

➔ 신청서의 접수 후 절차

ㅇ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완비 되었는지 확인하고 접수 확인 날인을 함

ㅇ 심사관은 물품의 세부자료를 조사하고 7일 이내 신청서 제출자에게 통보함

- 자료가 충분한 경우 : 법령에 따른 수수료 지불 청구서를 수령하도록 신청서 제출자에게 통보하며 신청인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불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신청서를 접수 등록 하도록 함

-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제출자가 서류 그리고/또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하며 신청서 제출자는 추가 자료를 1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함(제출 기간은 신청에 의해 연장이 가능)

○ 지정한 날짜가 만료된 시점까지 신청서 제출자가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완비되지 않은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의도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신청을 취소함

○ 신청서 제출자가 지정한 날짜 이내에 통보한 사항에 따라 물품에 대한 세부 자료 그리고/또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한 경우 담당직원은 수수료 지불 청구서를 수령하도록 신청서 제출자에게 통보할 것이며 지불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신청서 접수 등록하도록 함

○ 서류 등록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심사 과정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필수적인 서류의 미흡함이 발견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자가 세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 요청의 필요성을 기재하여 통보

➔ 신청 수수료

○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는 건당 2,000바트

➔ 신청서 접수 이후 처리절차

○ 품목분류를 위한 자료가 불충분 한 경우

- 담당직원은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 할 것이며 업무기준일 15일 이내에 추가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여전히 미흡한 경우 15일 이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함

- 추가자료 제출 통보 이후 자료를 제출 받지 못하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신청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담당 직원은 신청을 취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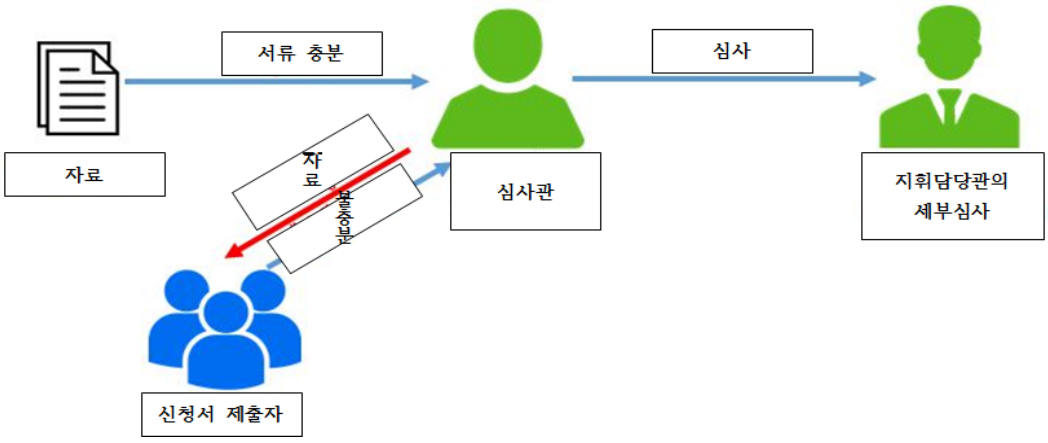

○ 충분한 자료가 접수 된 경우

- 담당직원은 세부서류가 충분 한 경우 문서를 통해 업무처리 예상 기간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함

○ 처리기간

- 수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 수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 신청서 유효기간

○ 신청서 유효기간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짐

➔ 결정의 취소/무효/변경

ㅇ 사전심사 신청의 결정은 다음의 경우 취소/무효/변경됨

① 취소 - 신청물품에 대한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결정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취소됨

② 무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법이 개정, 추가로 인하여 기존과 다르게 변동되는 경우 그 법률이 적용되는 날부터 무효

③ 변경 - 관세협력이사회의 결정 등과 같이 기존과 다르게 관세율표를 해석하도록 하는 새로운 사실 발생 또는 추가적인 다른 자료의 수령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결과가 취소, 철회, 회수 또는 수정되는 경우 기존의 결정서 내용이 무효가 됨

④ 효력 - 위의 경우 기존 결정서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세율표 해석 결과를 적용함

⑤ 소급 - 이미 인지세를 모두 납부하고 심사결과를 통지 받아 수입을 마친 물품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재심사

ㅇ 신청서 제출자는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 신청서 양식

ㅇ 사전심사 신청서 양식은 제 17/2562 호 관세청 공고에 첨부된 [양식 3]을 사용하여 신청함

ㅇ 작성란 설명

1번째란 : 신청서 제출자명은 왕국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에 물품의 품목분류를 알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수임인인 경우 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번째란 : 관세율표 규정을 위해 물품에 대한 필수적인 자료와 상세항목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물품의 특성, 성분, 생산법칙, 화학구조, 제작 방법, 작동 방식, 효용성, 포장형태, 기타표시항목 등 (첨부서류 추가가능)

5번째란 :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샘플, 사진, 카달로그, 분석결과, 제작방법, 작동 또는 동작 방식, 기술관련 자료, 테스트 분석 결과 또는 필수적인 기타 자료 (있는 경우)를 첨부한다.

6번째란 : 기존에 세율을 분류했던 유사/동일 제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자료가 있는 경우)

7번째란 : 수입시 예상되는 / 적절하다고 보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기재한다. (아는 경우)

8번째란 : 이 신청서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박을 통해 수입되어 오는 경우/항소 진행/관세청 내부 기관 또는 법원 심사 중인 경우 기재한다.

9번째란 : 샘플을 반환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작성한다.

-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적어도 15일에 반환하도록 한다.
- 반환을 요청하지 않거나 방문 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세청에서 샘플 처리를 위한 지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자가 처리에 관한 발생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11번째란 : 신청서 제출자의 서명 (직인날인 포함/있는 경우)은 왕국으로 수입하기 이전에 물품의 관세율표 품목분류를 알고자 하는 자의 서명을 의미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이 있거나 위임을 받는 자여야 한다. (첫번째 란과 동일)

ㅇ 작성 방법

비고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1부는 물품 1 종류/ 1 모델 / 1 크기에 사용하며 만약 1 종류/ 1 모델/ 1 크기 이상의 물품인 경우 문의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에 따라 신청서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2. 만약 신청서 제출자가 물품에 대한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결과 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취소된다.

3.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효가 된다.

3.1 관세율표 해석에 적용된 관세율표에 관한 법이 개정, 추가로 인해 기존과는 다르게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그 법률이 적용되는 날로부터 무효가 된다.

3.2 관세협력이사회의 결정 등과 같이 기존과는 다르게 품목분류 해석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사실 발생, 또는 추가적인 다른 자료의 수령으로 인해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결과가 취소, 철회, 회수, 또는 수정되는 경우 기존의 품목분류 해석 결과는 무효가 되고 기존 결과 통지서의 효력에 이어서 새로운 품목분류 해석 결과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미 인지세를 모두 납부하고 심사 결과 통지를 받아 수입을 마친 물품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3.3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세율 변동에 관한 재무부의 고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하는 시점의 재무부의 고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4. 신청서 제출자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관세율표 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5.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부령에 명시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표 22] 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번역본) [양식 3]

<table>
<tr><td>1. 신청서 제출자명……...
회사/상사/상점……..
주소…….
……
주민등록번호/회사/상사/상점의 납세자 고유번호
……
전화……..… 전송……
……..….
E-mail address …….</td><td>2. 물품 정보
물품명 / 거래상 명칭/ 상표/ 모델……..
……
단가……. 원산지……
……
항구 / 수입국……
…….
수입 예상 일자……
…….</td></tr>
<tr><td colspan="2">3. 태국어로 요약한 관세율표 해석에 필수적인 물품에 대한 세부 설명 (예를 들어, 물품의 특성, 성분, 생산법칙, 화학구조, 제작 방법, 작동 방식, 효용성, 포장 형태 등)

비고 :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류 첨부 가능</td></tr>
<tr><td>4. 물품 수입 확인 문서
☐ 구입주문서 (Purchase Order) ☐ 물품 매매계약서 (Sale Contract) ☐ 송장 (Invoice) ☐ 신용장 (Letter of Credit)
☐ 견적송장 (Proforma Invoice)
☐ 기타 …….</td><td>5. 샘플 / 물품관련 서류
☐ 샘플 ☐ 사진
☐ 카달로그 ☐ 분석결과
☐ 제작 방법 ☐ 작동 또는 동작 방식
☐ 기타 ……</td></tr>
<tr><td>6. 기존에 세율을 분류했던 유사/동일 제품과 관련된 자료</td><td>7. 예상 / 적절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td></tr>
<tr><td colspan="2">8. 관세율 해석을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사중이거나 / 관세청 내부 기관에서 진행/항소하고 있는지의 여부
☐ 있음 (기재) …… ☐ 없음</td></tr>
<tr><td colspan="2">9. 샘플 반환 (샘플 제출의 경우) ☐ 반환 필요 ☐ 반환 불필요</td></tr>
<tr><td colspan="2">10. 비고 : 신청서 제출자는 관세청에서 사전 관세율 해석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td></tr>
<tr><td colspan="2">11. 신청서 제출자의 서명 (직인날인- 있는경우)</td></tr>
</table>

➔ 태국 Tariff E-Service

○ 태국 품목분류 전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상품에 대한 분류 가이드라인과 사전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태국 Tariff E-Service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

STEP 1 **Tariff E-Service 접속**

- 주소 : (http://tariffeservice.customs.go.th/)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회원가입 ①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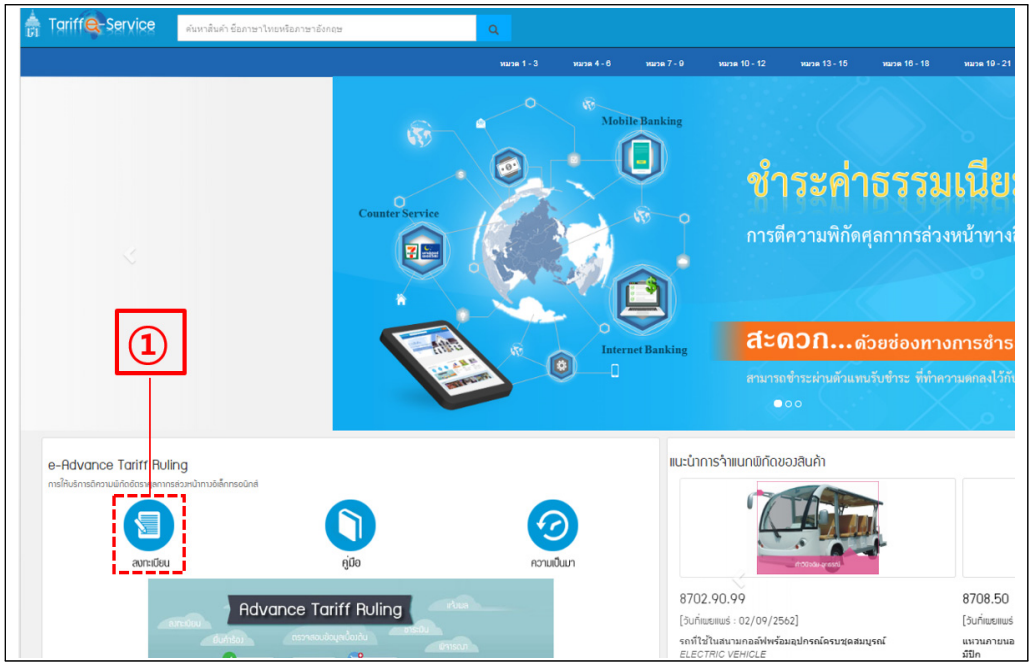

STEP 2 회원 가입-이용약관 동의

- 회원가입을 위한 주의 사항과 이용약관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의를 위한 □박스 클릭 후 파란색 버튼(계속)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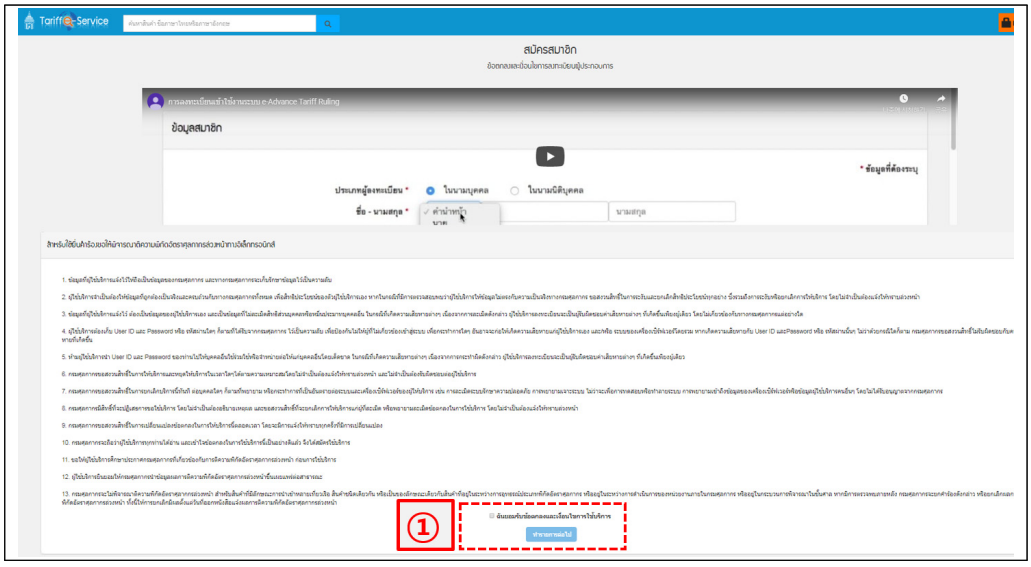

○ 주의사항

1.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세관 소유의 데이터로 간주하며 기밀을 유지함
2. 사용자는 세관에 진실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든 혜택을 중단하고 취소할 권리가 있음
3.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손상에 책임을 져야함
4. 사용자는 ID 및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 하여야함
5. 세관은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단할 권리를 보유함
6. 사용자는 품목분류 판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동의

STEP 3 회원 가입-회원 정보 기입

- 회원가입의 유형을 개인 또는 법인 이름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사항이 있으나 임의로 기입하여도 가입이 됨
- 붉은색 * 표시의 경우 필수 기재사항
- 보안문자를 보이는 대로 기입 후 왼쪽 파란색 버튼(등록)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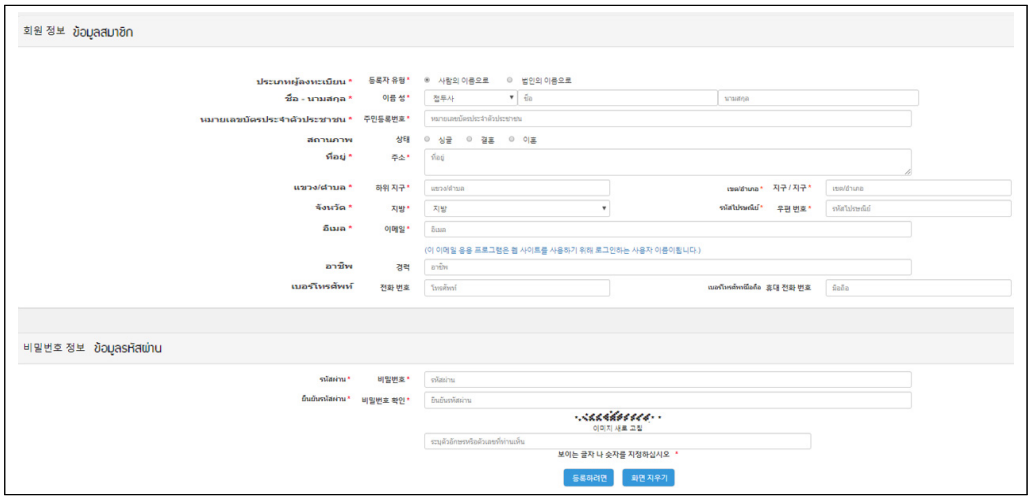

STEP 4 로그인을 위한 이메일 인증

- 회원 가입 시 기입하였던 이메일 주소로 인증메일이 수신되면 링크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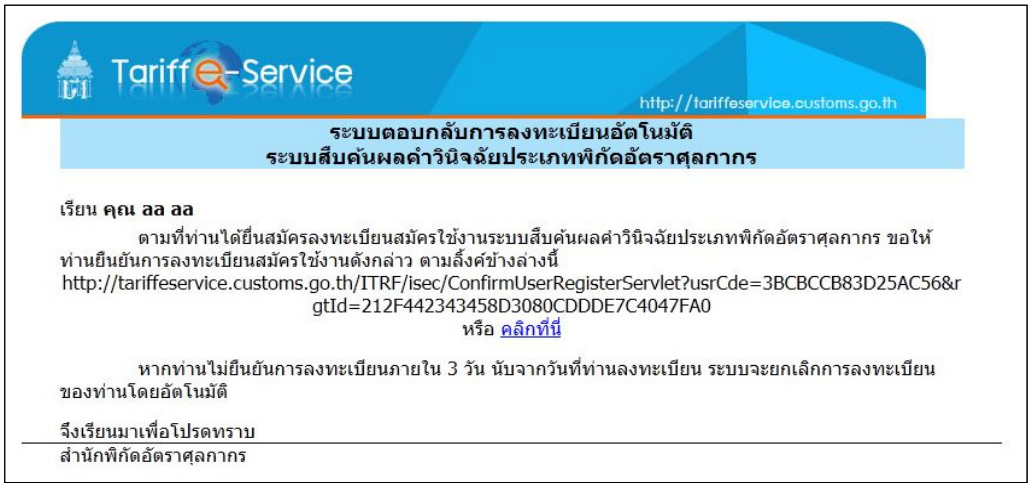

STEP 5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로그인

-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오른쪽 주황색 PRECLASS ONLINE 클릭
- 첫 번째 Advanced Tariff Ruling 클릭

- 로그인 정보 기입 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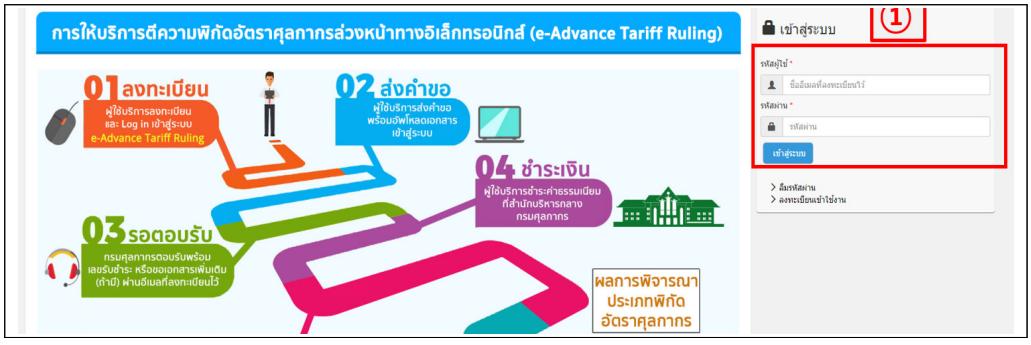

STEP 6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진행

- 화면 오른쪽 상당 PreClassผู้ใช้บริการ(프리클래스사용자) 클릭 후 세 번째 진단 요청 클릭
- 진단요청 화면내에 제품명(태국어, 영어), 일반이름, 통칭 등의 내용을 기입하고 증빙서류 구비 여부를 클릭
- 증빙서류 없는 경우 수입 60일 전에 신청을 할 수 있음
- 제품의 특성 정보도 기입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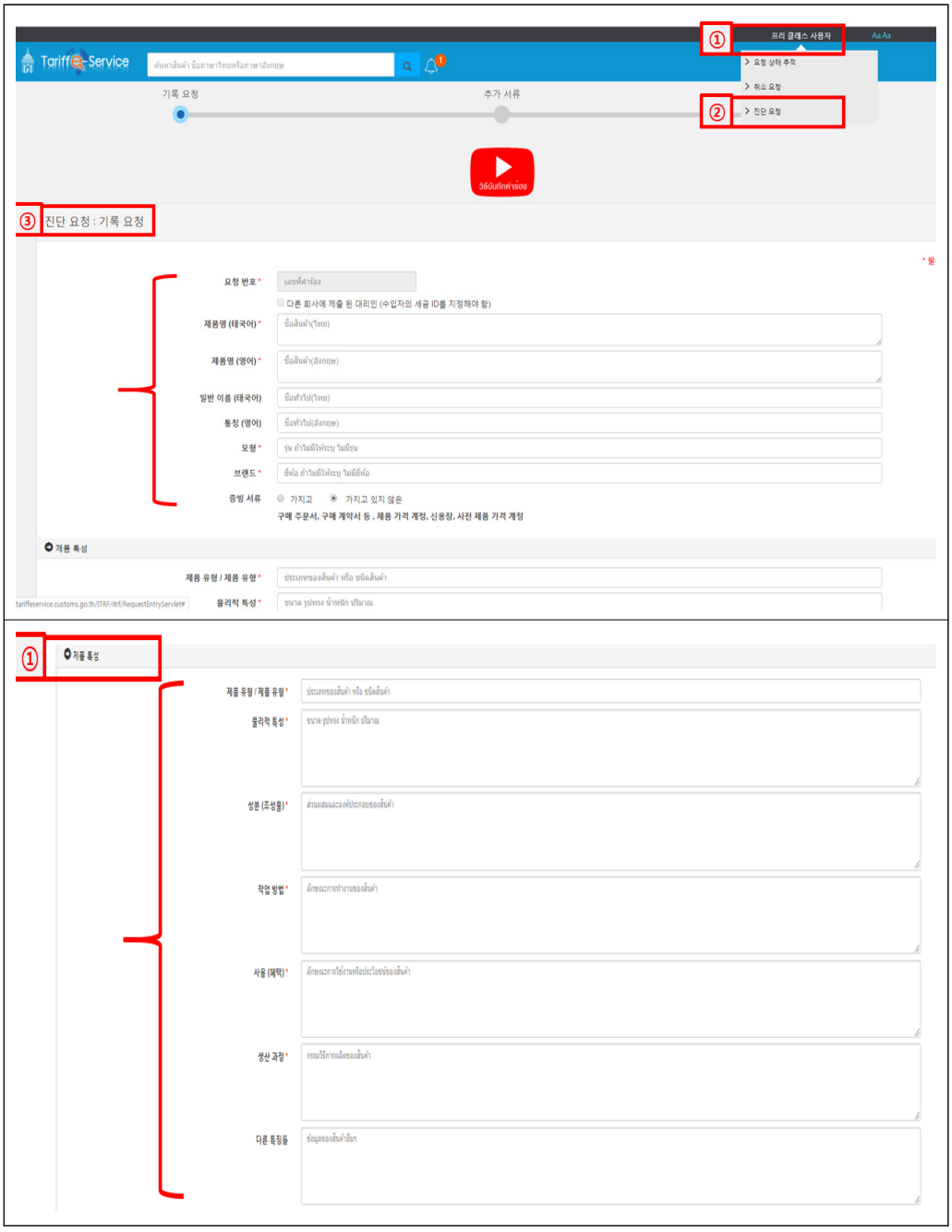
①
프리 클레스 사용자
Aa Aa
Tariff e-Service
ค้นหาสินค้า ชื่อภาษาไทยหรือภาษาอังกฤษ
> 요청 상태 추적
> 취소 요청
②
> 진단 요청
기록 요청
추가 서류
วิธีเป็นที่ปรึกษาร้อง
③ 진단 요청 : 기록 요청
* 필수
요청 번호 *
เลขที่คำร้อง
다른 회사에 제출 된 대리인 (수입자의 세금 ID를 지정해야 함)
제품명 (태국어) *
ชื่อสินค้า(ไทย)
제품명 (영어) *
ชื่อสินค้า(อังกฤษ)
일반 이름 (태국어)
ชื่อทั่วไป(ไทย)
통칭 (영어)
ชื่อทั่วไป(อังกฤษ)
모형 *
รุ่น ถ้าไม่มีให้ระบุ ไม่มีรุ่น
브랜드 *
ยี่ห้อ ถ้าไม่มีให้ระบุ ไม่มียี่ห้อ
증빙 서류
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은
구매 주문서, 구매 계약서 등 , 제품 가격 계정, 신용장, 사전 제품 가격 계정
제품 특성
제품 유형 / 제품 유형 *
ประเภทของสินค้า หรือ ชนิดสินค้า
물리적 특성 *
ขนาด รูปทรง น้ำหนัก ปริมาณ
tariffeservice.customs.go.th/ITRF/itrf/RequestEntryServlet#
①
제품 특성
제품 유형 / 제품 유형 *
ประเภทของสินค้า หรือ ชนิดสินค้า
물리적 특성 *
ขนาด รูปทรง น้ำหนัก ปริมาณ
성분 (조성물) *
ส่วนผสมและองค์ประกอบของสินค้า
작업 방법 *
ลักษณะ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สินค้า
사용 (혜택) *
ลักษณะการใช้งานหรือ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สินค้า
생산 과정 *
กรรมวิธีการผลิตของสินค้า
다른 특징들
ข้อมูลของสินค้าอื่นๆ

STEP 7 예상되는 품목분류 코드를 기입

- ①번의 경우 HS CODE 류(2단위)를 선택하는 항목
- ②번의 경우 HS CODE 호(4단위)를 선택하는 항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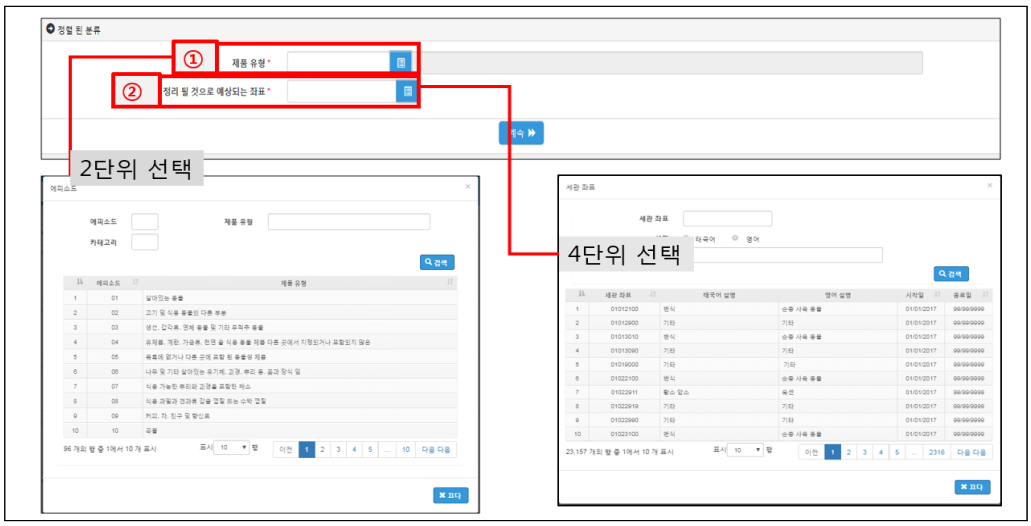

STEP 8 제품 사진 및 첨부서류 제출

- ①번 클릭 후 구비서류를 업로드

STEP 9 제출 정보 최종 확인 및 이용약관 동의 및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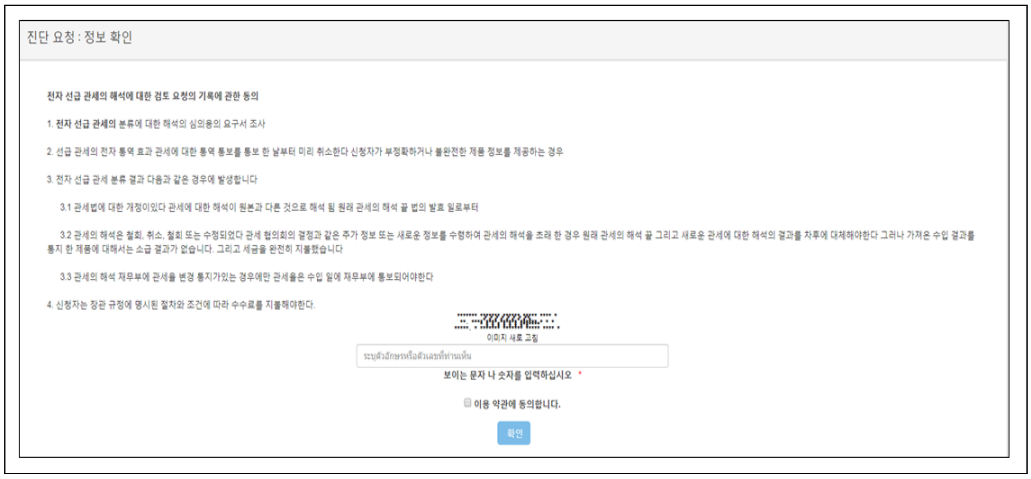

○ 태국 Tariff E-Service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처리 절차

01 - 등록 및 로그인

02 -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제출

03 - 세관 당국의 검토 및 추가 요구사항 송부

04 - 수수료 지급

05 - 결정서 수취 대기

2. 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Tariff E-Service 접속

- 주소 : (http://tariffeservice.customs.go.th/ITRF/itrf/SearchExamineTariffServlet)
- 화면 상단 ① 검색 아이콘 클릭

STEP 2 상세 검색

- 화면 중앙 검색 박스로 부, 류, 세번, 제품명 등 선택하거나 입력하여 상세히 검색할 수 있음
- 조회할 물품의 ① '부' ②'류' 항목 선택
- ③ '세번'항목은 2단위, 4단위, 6단위 hs코드를 입력할 수 있으며 ④ '제품명'을 입력한 후 ⑤ '검색'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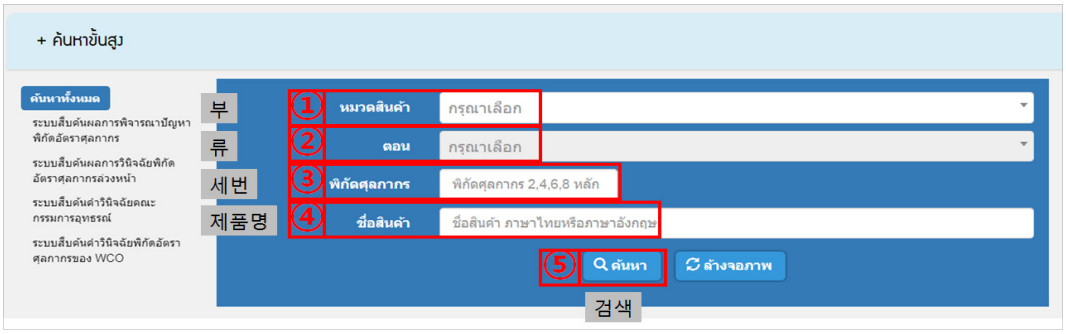

STEP 3 검색 결과 확인

- 검색 목록 내 품목분류에 관한 판결 유형이 다양하게 조회됨
- HS코드 아래 위치한 초록, 분홍, 주황색 배너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유형을 나타냄
- ① WCO에 따른 판결, ②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항소판결), ③ 사전심사신청에 따른 판결임
- 조회할 물품의 ③ '사전심사판결' 항목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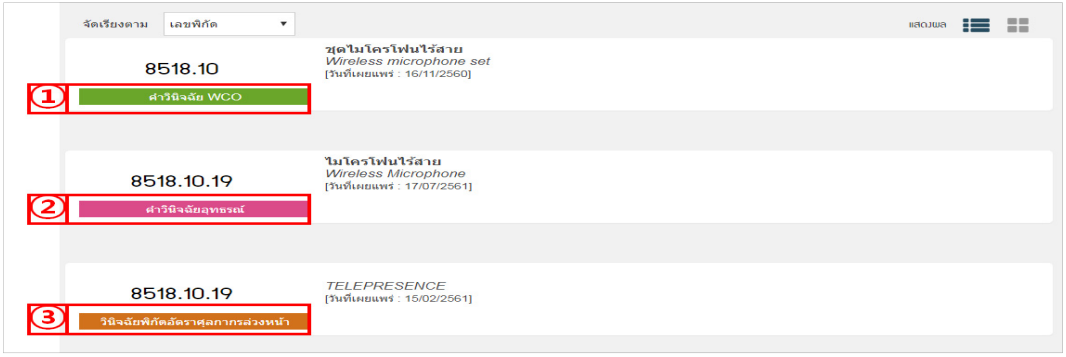

STEP 4 결정서 확인

- 해당 물품의 결정 상세 내역이 있는 화면으로 전환됨
- 결정서 상단에서 물품의 사진, 결정세번, 상품명, 발행일자, 판결유형, 구속력에 대한 정보, 부 표제, 류 표제를 확인할 수 있음
- 결정서 하단은 제품유형, 물리적 특성, 성분(조성물), 작업방법, 용도, 생산과정, 적용 통칙을 포함함

물품사진

결정세번 8518.10.19

상품명 *TELEPRESENCE*

출시일자 [วันที่เผยแพร่ : 15-02-2561]

วินิจฉัยพิกัดอัตราศุลกากรล่วงหน้า

판결 유형

구속력 การจัดพิกัดฯ นี้ ผูกพันกับผู้สอบถามและสามารถใช้กับการนำเข้าสินค้าที่มีข้อเท็จจริงเหมือนกับรายนี้เท่านั้น

부 표제 หมวด 16 เครื่องจักรและเครื่องใช้กล เครื่องอุปกรณ์ไฟฟ้า ส่วนประกอบของเครื่องดังกล่าว เครื่องบันทึกเสียงและเครื่องถอดเสียง เครื่องบันทึกและเครื่องถอดภาพและเสียงทางโทรทัศน์ ส่วนประกอบและอุปกรณ์ประกอบของเครื่องดังกล่าว

류 표제 ตอน 85 เครื่องจักรไฟฟ้า เครื่องอุปกรณ์ไฟฟ้า และส่วนประกอบของเครื่องดังกล่าว เครื่องบันทึกเสียงและเครื่องถอดเสียง เครื่องบันทึกและเครื่องถอดภาพ และเสียงทางโทรทัศน์ รวมทั้งส่วนประกอบและอุปกรณ์ของเครื่องดังกล่าว

ประเภทสินค้า/ชนิดสินค้า 제품유형

ไมโครโฟนอื่น ๆ จะมีขาตั้งไมโครโฟนหรือไม่ก็ตาม

ลักษณะทางกายภาพ 물리적 특성

อุปกรณ์ประชุมผ่านทางไกล (Video Conference) แบบ All-in-one บรรจุมาในกล่อง ขนาดบรรจุภัณฑ์ สูง 150 เซนติเมตร กว้าง 67 เซนติเมตร ยาว 185 เซนติเมตร

ส่วนผสม (องค์ประกอบ) 성분(조성물)

1. อุปกรณ์แสดงผลขนาด 70 นิ้ว จำนวน 1 ตัว ประกอบติดมาพร้อมอุปกรณ์ต่างๆเป็นหน่วยเดียวกัน ได้แก่ ชุดประมวลผล (Codec) จำนวน 1 ตัว, กล้อง จำนวน 1 ตัว, และ ลำโพง จำนวน 4 ตัว 2. ไมโครโฟน 2 ชุด 3. อุปกรณ์ต่างๆ เช่น ชุดสายไฟ , สาย LAN, สาย HDMI, สาย VGA to DVI, สายสัญญาณเสียง เป็นต้น

วิธีการทำงาน 작업 방법

การใช้งาน 용도

นำมาใช้ในการประชุมผ่านทางไกล ให้การแสดงผลทั้งภาพและเสียง

กรรมวิธีการผลิต 생산 과정

ในฐานะเป็น

ไมโครโฟนอื่น ๆ จะมีขาตั้งไมโครโฟนหรือไม่ก็ตาม

ตามหลักเกณฑ์ 적용 통칙

อาศัยหลักเกณฑ์การตีความ ข้อ 1 และ ข้อ 6

05

인도네시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1. 인도네시아 품목분류 사전심사 세부절차

사전심사의 종류	품목분류, 과세가격
신청인	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등록된 수입자 번호를 소유하고 있는자
신청시기	물품을 수입하기 전
처리기간	서류가 완벽하게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관	세관 및 소비세 본부
유효기한	결정된 날부터 3년
신청 수수료	규정없음

가. 사전심사 절차

➔ 신청인

○ 인도네시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법령에서 한정하였음

○ 신청인은 통관을 위한 수입자 번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수입되는 물품이 아직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어야 함

- 수입자 번호는 인도네시아 관세 식별 번호로 수출입업체와 관세사에게 제공되는 번호임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수입자는 관세 식별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전자적으로 신청하면 됨

· 신청을 위하여 수입자는 설립증명서, 거주지증명서, 납세자식별번호(NPWP), 사업자 라이센스(SUP), 회사 등록증(TDP), 수입식별번호(API), 연례보고서 성명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함

➔ 신청 시기 및 신청서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기는 물품을 수입하기 전

ㅇ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서식은 수입신고전 품목분류 결정 및 신청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장관령 (NO.194/PMK.04/2016) 서식A로 인도네시아 언어로 작성

ㅇ 서식A 작성방법

(1)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장의 이름 기재

(2)번 : 관세청 공무원이 기재

(3)번 : 제출일 기재

(4)번 : 기업명 기재

(5)번 : 기업 주소 기재

(6)번 : 신청서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기업의 전화번호, 팩스 및/또는 이메일 기재

(7)번 : 기업의 납세자번호 기재

(8)번 : 통관업무를 위해 수입자번호를 기재

(9)번 : 물품 설명/이름/품종을 상세히 기재

(10)번 : 상표, 타입 또는 모델을 완벽한 형태로 기재

(11)번 : 신청서에 첨부된 보충자료명을 기재[7)]

(12)번 : 물품 샘플 제출에 부합하게 기재

(13)번 : 세관신고서 제출지 유입항 세관 기재

7) 상업송장 및 구매주문서는 보충자료로 첨부하여야함

(14)번 : 신청한 물품의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고 자세하게 기재. 기타 스펙/특징도 기재. 예를 들어, part number, 내용물, 상품 확인에 도움이 되는 모든 상품 설명 또는 기타 사항(물품 생산공정 또는 물품제작공정)

(15)번 : 신청인이 생각하는 예상 세번 기재

(16)번 : 현재 수입신고서 제출 과정에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17)번 : 현재 불복 및/또는 이의제기 과정에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18번) : 통관업무를 위한 수입자번호상 기재된 이름 또는 신청기업 임원의 이름, 서명, 도장

[표 23]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신청서(번역본)

관세청장 귀하,

참조자: .....(1).....국장

관세청 본부

주소: Jalan Jend.A. Yani – Jakarta 13230

<table>
<tr><th colspan="3">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th></tr>
<tr><td>신청번호 : .....(2).....</td><td>기업명 : .....(4).....
기업 주소 : .....(5).....</td><td>납세자번호 : .....(7).....</td></tr>
<tr><td>날짜 : .....(3).....</td><td>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팩스/이메일 : .....(6).....</td><td>수입자번호 : .....(8).....</td></tr>
<tr><td colspan="3">수입할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물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td></tr>
<tr><td colspan="3">물품 설명 : ...(9)...</td></tr>
<tr><td colspan="3">상표 및 타입/모델 : ...(10)...</td></tr>
<tr><td colspan="3">보충자료 (브로셔/리플렛/분석자료/사진/샘플/기타) : .....(11).....</td></tr>
<tr><td colspan="3">물품 샘플 : • 있음/없음*) .....(12).....
• 회수요청/회수요청하지 않음.*)
(관세청은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0(삼십)일내 찾아가지 않는 물품 샘플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td></tr>
<tr><td colspan="3">유입 예정항 : .....(13).....</td></tr>
<tr><td colspan="3">신청한 물품에 대한 설명 (생산공정, 작업방법, 재료 구성, 기능/용도, 스펙, 용량/크기, 포장 등) : .....(14).....</td></tr>
<tr><td colspan="3">예상 세번 : .....(15).....</td></tr>
<tr><td colspan="3">해당 물품이 현재 수입신고서 제출 과정에 있는가 : □ 예 □ 아니오 ...(16)...</td></tr>
<tr><td colspan="3">해당 물품이 현재 불복 또는 이의제기 과정에 있는가 : □ 예 □ 아니오 ...(17)...</td></tr>
<tr><td colspan="3">제출한 모든 정보와 서류는 진실임을 확인합니다.
.....(18).....

참고 : 하나의 아이템에 하나의 신청서식을 작성</td></tr>
</table>

*) 불필요할 경우 삭제

[표 24]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신청서(원본)

A. FORMAT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Yth.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u.p. Direktur .....(1).....
Kantor Pusat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Jalan Jend. A. Yani - Jakarta 13230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Nomor Aju : .....(2).....	Nama Perusahaan : .....(4)..... Alamat Perusahaan : .....(5).....	Nomor Pokok Wajib Pajak: .....(7).....
Tanggal : .....(3).....	Telp/Fax/Email yang dapat dihubungi : .....(6).....	Nomor Identitas: .....(8).....
dengan ini mengajukan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atas barang impor sebelum penyerahan pemberitahuan pabean terhadap barang yang akan kami impor berupa:		
Uraian Barang : .....(9).....		
Merek dan tipe/model : .....(10).....		
Data pendukung (brosur/*leaflet*/*certificate of analysis*/foto/contoh/lain-lain) : .....(11).....		
Contoh Barang : • Ada/Tidak Ada*) .....(12)..... • Diminta kembali/Tidak diminta kembali*) *(DJBC tidak bertanggung jawab terhadap barang contoh yang tidak diambil dalam jangka waktu 30 (tiga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KSI ini diterbitkan).*		
Rencana pelabuhan pemasukan : .....(13).....		
Penjelasan mengenai barang yang diajukan (proses pembuatan, cara kerja, komposisi bahan, fungsi/kegunaan, spesifikasi, kapasitas/ukuran, kemasan, dsb) : .....(14).....		
Pendapat Pos Tarif : .....(15).....		
Saat ini barang sedang diajukan pemberitahuan pabean : ☐ YA ☐ TIDAK .....(16).....		
Saat ini barang sedang dalam proses keberatan/atau banding : ☐ YA ☐ TIDAK .....(17).....		
Dengan ini saya menyatakan bahwa seluruh informasi dan dokumen yang dilampirkan adalah benar. Cap .....(18).....		
Catatan : 1 (satu) formulir permohonan untuk 1 (satu) item barang		

**) Coret yang tidak perlu*

➔ 신청시 첨부서류

ㅇ 신청서와 같이 다음의 서류를 물품확인을 위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물품의 상표
- 이미지/브로셔
- 카달로그
- 제품사양서
- 검사증명서
- 제조공정도
- 물질안전보건자료
- 분석증명서
- 관세분석소 또는 기타 분석소에서 발급된 시험 결과
- 기타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필요한 서류

ㅇ 관세청 공무원은 수입자에게 물품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수입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 제출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 결정은 기각 됨

➔ 서류의 보완

ㅇ 서류를 제출 받은 관세청 공무원은 물품을 확인하는 목적에서 신청서와 품목에 관한 기술자료를 심사를 하며 추가로 검토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상 날짜로부터 14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기각함

- 서식은 수입신고전 품목분류 결정 및 신청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장관령(NO.194/PMK.04/2016) 서식B로 인도네시아 언어로 작성

ㅇ 서식B 주요 내용

(1)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명 기재

(2)번 : 통관업무를 위한 수입자번호상 기재된 기업명 또는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명 기재

(3)번 : 기업 주소 기재

(4)번 : 기업이 발송한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의 서신번호 기재

(5)번 : 물품의 종류(품종) 기재

(6)번 : 자료/정보 미비내용 기재

(7)번 : 추가자료, 물품 샘플 및/또는 기타 정보 요청서를 발급한 장소 기재

(8)번 : 추가자료, 물품 샘플 및/또는 기타 정보 요청서가 발급된 연, 월, 일 기재

(9)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장 기재

(10)번 : 추가자료, 물품 샘플 및/또는 기타 정보 요청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진 과장 기재

(12)번 : 과장명 기재

(13)번 : 과장의 공무원번호(NIP) 기재

[표 25]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신청서(번역본)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1).... 국

주소: JALAN JENDERAL A.YANI JAKARTA-13230 KOTAK POS 225 JAKARTA -13013

전화번호: (021) 296 88521, 팩스: (021) 4897928, 홈페이지: www.beacukai.go.id

상담센터: 1500225, 이메일: info@customs.go.id

번호 : S- /BC...../20.....
유형 :
첨부 :
제목 : 추가자료, 물품 샘플 및/또는 기타 정보 요청

수신인 귀하,
.....(2).....기업 임원
.....(3).....

귀하의 서신인 No.....(4).....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해당 신청서를 통해 귀사는 .....(5)..... 물품에 대한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상기 언급된 바와 관련, 귀사의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a. .....(6).....
   b. .....
   c. .....
   d. 기타
3. 관세청은 상기 2번에서 언급된 미비한 부분이 보완될 때까지 귀사의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내사항은 이상입니다.

.....(7)....., ...(8).....
.....(9)..... 국장 명의로
.....(10).....과장
(서명)
.....(11).....
공무원번호.....(12).....

[표 26]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신청서(원본)

DAN/ATAU INFORMASI LAINNYA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IREKTORAT .....(1).....
JALAN JENDERAL A. YANI JAKARTA-13230 KOTAK POS 225 JAKARTA-13013
TELEPON (021) 296 8852 1; FAKSIMILE (021) 4897928; SITUS www.beacukai.go.id
PUSAT KONTAK LAYANAN 1500225; SURAT ELEKTRONIK info@customs.go.id

Nomor : S- /BC...../20..... 20.....
Sifat :
Lampiran :
Hal : Permintaan Data Tambahan, Contoh Barang, Dan/Atau Informasi Lainnya

Kepada Yth.:
Pimpinan Perusahaan .....(2).....
.....(3).....

Sehubungan dengan surat Saudara Nomor: .....(4)..... hal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bersama ini disampaikan hal-hal sebagai berikut:

1. Melalui surat tersebut, Saudara mengajukan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untuk produk berupa .....(5).....
2. Berkaitan dengan hal tersebut di atas, dapat kami sampaikan bahwa terdapat kekurangan pada permohonan Saudara yaitu:
   a. .....(6).....
   b. .....
   c. .....
   d. dst
3. Berdasarkan hal tersebut butir 2 di atas, kami belum dapat melakukan pemrosesan terhadap permohonan Saudara sampai dengan syarat tersebut terpenuhi.

Demikian disampaikan agar maklum.

.....(7)....., ...(8).....

a.n. Direktur .....(9).....
Kasubdit .....(10).....

ttd

.....(11).....
NIP .....(12).....

➔ 심사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결정기간은 최대 30일 이내 이며 완벽하게 서류가 접수 된 때로부터 기산이 됨

- 만약 위 서식B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게 된다면 추가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한 날짜로부터 기산이 됨

➔ 결정

ㅇ 결정은 관세청장 명으로 결정서를 발급함

- 서식은 수입신고전 품목분류 결정 및 신청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장관령(NO.194/PMK.04/2016) 서식C로 인도네시아 언어로 작성됨

ㅇ 서식C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

(1)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 번호 기재

(2)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 날짜 기재

(3)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명 기재

(4)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주소 기재

(5)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납세자번호 기재

(6)번 : 통관업무를 위해 수입자번호를 기재

(7)번 : 수입신고전 수입물품 분류 결정 및 제출방법에 관한 재무부장관령의 제목과 번호 기재

(8)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관세청장 결정서가 발급된 장소명 기재

(9)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관세청장 결정서가 발급된 연, 월, 일 기재

(10)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장 (직급명) 기재

(11)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장이름 기재

(12)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장의 공무원번호(NIP) 기재

(13)번 : 불복 및 이의제기 분야를 담당하는 국장 기재

(14)번 : 수입물품이 유입되는 항만/공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 이름을 기재

(15번 : 수입물품이 유입되는 항만/공항을 관할하는 세관장 이름을 기재

[표 27]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결정서(번역본)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관세청장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PKSI)
No.: ...../PKSI/BC...../20....

아래 기업의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No: .....(1)..... 일자 .....(2).....)에 대해

기업명	: .....(3).....	납세자번호	: .....(5).....
기업 주소	: .....(4).....	수입자번호	: .....(6).....

재무부 장관령 No.....(7).....을 근거로 다음을 결정한다.

물품 확인	: .....
세번	: .....
품목분류 결정 근거	: .....
유입 예정항	: .....

이 결정은 결정일로부터 3(삼)년간 유효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이다.

1. 품목분류 관련 법령인 재무부 장관령에서 품목분류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
2. 수입물품이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관세청장 결정서상의 물품과 상이한 경우
3.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관세청장 결정이 철회되거나 대체된 경우
4.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은 수입자가 아닌 다른 수입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

신청인은 결정일로부터 최대 30(삼십)일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시 재심을 위한 추가자료와 증거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8)....., ...(9).....

국세청장 명의로

.....(10)..... 국장

.....(11).....

공무원번호.....(12).....

참조 :

1. 관세청장
2. .....(13).....국장
3. .....(14).....관세청 지역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
4. .....(15)..... 세관장

[표 28]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결정서(원본)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PKSI)
Nomor: ...../PKSI/BC...../20.....

Berdasarkan surat permohonan Saudara Nomor: .....(1)..... tanggal .....(2)..... hal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Atas Nama:

Nama Perusahaan : .....(3).....	Nomor Pokok Wajib Pajak : .....(5).....
Alamat Perusahaan : .....(4).....	Nomor Identitas : .....(6).....

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 menetapkan:

Identifikasi Barang : .....

Pos Tarif : .....

Dasar Penetapan Klasifikasi : .....

Rencana pelabuhan pemasukan : .....

Penetapan ini berlaku selama 3 (tig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penetapan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dalam hal:

1. terdapat perubahan ketentuan mengenai klasifikasi barang dalam Peraturan Menteri Keuangan yang mengatur ketentuan mengenai klasifikasi barang;
2. identifikasi barang yang diimpor berbeda dengan yang tercantum dalam Keputusan Direktur Jenderal mengenai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3. terhadap Keputusan Direktur Jenderal mengenai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diganti atau dibatalkan; atau
4. digunakan oleh importir yang bukan merupakan importir yang mengajukan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yang diterbitkan.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bat 30 (tiga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netapan, Pemohon dapat mengajukan permohonan kembali dengan dilengkapi data dan bukti yang mendukung pengajuan permohonan kembali tersebut.

.....(8)....., ...(9).....

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Direktur .....(10).....

.....(11).....
NIP .....(12).....

Tembusan :
1.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2. Direktur .....(13).....;
3. Kepala Kantor Wilaya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Bea dan Cukai .....(14).....;
4. Kepala Kantor Pengawasan dan Pelayanan Bea dan Cukai .....(15).....

ㅇ 만약 품목분류 신청서가 반려 되는 경우에는 국장이 관세청장 명의로 반려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서를 발송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가 미비하거나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을 하지 않고 서류를 반려함
- 이 경우 신청시 제출한 물품의 샘플의 경우 통지서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할 수 있음

ㅇ 서식D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반려 통지서

(1)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명 기재

(2)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명 기재

(3)번 : 통관업무를 위해 수입자번호 기재

(4)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주소 기재

(5)번 : 기업이 제출한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의 서신번호 기재

(6)번 : 기업이 제출한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상 날짜를 기재

(7)번 : 기업이 제출한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 제목 기재

(8)번 : 물품의 종류(품종) 기재

(9)번 : 기업이 제출한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 검토결과를 기재

(10)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 반려통지서 발급처 기재

(11)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반려통지서가 발급된 연, 월, 일 기재

(12)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 반려통지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진 과장 기재

(13)번 : 과장 이름 기재

(14)번 : 과장의 공무원번호(NIP) 기재

[표 29]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결정 반려 통지서(번역본)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1)..... 국

주소: JALAN JENDERAL A.YANI JAKARTA-13230 KOTAK POS 225 JAKARTA -13013

전화: (021) 296 88521, 팩스: (021) 4897928, 홈페이지: www.beacukai.go.id

상담센터: 1500225, 이메일: info@customs.go.id

번호 : S- /BC...../20,,,,,

유형 : 일반

제목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 반려통지

수신인 귀하,

.....(2)..... 기업 임원

수입자번호 .....(3).....

주소 .....(4).....

No.....(5)...., ...(6)....일자, ...(7)..... 제목의 귀하의 서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해당 서신을 통해 귀사는 .....(8)..... 물품에 대해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관세청은 귀하가 제출한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9).....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3. 상기 2번의 사유로 귀사의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귀하께서 제출하신 물품 샘플은 이 통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최장 30(삼십)일 내 회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기간내 찾아가지 않는 물품 샘플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내사항은 이상입니다.

. . . . . (10) . . . . . ,
.....(11).....

.....(1)..... 국장 명의로

.....(12)..... 과장

(서명)

.....(13).....

공무원번호.....(14).....

참조:

.....(1).....국장

*) *신청서에 물품 샘플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함.*

[표 30]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결정 반려 통지서(원본)

D. FORMAT SURAT PEMBERITAHUAN PENOLAKAN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IREKTORAT .....(1).....
JALAN JENDERAL A. YANI JAKARTA 13230 KOTAK POS 225 JAKARTA 13013
TELEPON (021) 29688521; FAKSIMILE (021) 4897928; SITUS www.beacukai.go.id
PUSAT KONTAK LAYANAN 1500225; SURAT ELEKTRONIK info@customs.go.id

Nomor : S- /BC...../20..... 20.....
Sifat : Biasa
Hal : Pemberitahuan Penolakan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Kepada Yth.:
Pimpinan Perusahaan .....(2).....
Nomor Identitas .....(3).....
Alamat .....(4).....

Sehubungan dengan surat Saudara Nomor .....(5)..... tanggal .....(6)..... hal .....(7)....., bersama ini disampaikan hal-hal sebagai berikut:

1. Melalui surat tersebut di atas, Saudara mengajukan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atas barang impor berupa .....(8).....
2. Sesuai dengan hasil penelitian kami terhadap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yang Saudara ajukan, dapat disimpulkan bahwa .....(9).....
3. Sehubungan dengan hal tersebut butir 2, permohonan Saudara tidak dapat dilakukan pemrosesan lebih lanjut.
4. Selanjutnya terhadap contoh barang yang telah Saudara diajukan, dapat diambi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bat 30 (tiga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diterbitkannya pemberitahuan ini dan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tidak bertanggung jawab terhadap contoh barang yang tidak diambil dalam jangka waktu tersebut*).

Demikian disampaikan agar maklum.

.....(10)....., ...(11).....

a.n. Direktur .....(1).....
Kasubdit .....(12).....

ttd

.....(13).....
NIP .....(14).....

Tembusan:
Direktur .....(1).....

*) *Dalam hal permohonan disertai dengan contoh barang*

➔ 유효기간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유효기간은 결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

ㅇ 해당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수입자가 신청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유효함

- 단, 유사상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자가 있는 경우 분류 결정에 참고로 사용할 수 있음

ㅇ 결정된 내용은 인도네시아 모든 세관관할 구역에서 유효함

➔ 재심사

ㅇ 신청인은 관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결정을 변경하거나 반려통지서를 발급함

➔ 결정의 무효

ㅇ 다음의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이 유효하지 않게 됨

- 품목분류를 규정하는 재무부령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 수입된 물품의 확인결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과 다른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변동이 생기거나 취소된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정서를 받은 수입자가 아닌 다른 수입자에게 결정서가 사용된 경우

➔ 기타사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출방법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의 제출은 아래의 주소로 송부 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하여야함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up Direktur Teknis Kepabeanan(국장 및 관세국장)
Kantor Pusat Bea dan Cukai(세관 및 소비세 본부)
Jl. Jend. Ahmad Yani (By Pass) Rawamangun
Jakarta Timur 13230, kotak pos 108(주소)

○ 10단위 코드에서 8단위 코드로의 변경

- 인도네시아 관세율체계가 변경되어(BTKI 2017) 기존 10단위 코드에서 8단위 코드 사용
- 10단위 코드는 2017년 2월 28일에 만료됨

FTA 체약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1편 (중국 · 인도 · 베트남 · 태국 · 인도네시아)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